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 3486호

2018. 10. 4.(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 목 차

### ◆ 자치법규

#### [조 례]

|                                                    |    |
|----------------------------------------------------|----|
| 제69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                   | 4  |
| 제69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  |
|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 8  |
| 제690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9  |
| 제6907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1 |
| 제6908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2 |
| 제6909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 14 |
| 제6910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5 |
| 제691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7 |
| 제6912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8 |
| 제691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9 |
| 제6914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0 |
| 제691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4 |
| 제691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5 |
| 제6917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9 |
| 제6918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0 |
| 제6919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1 |
| 제692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2 |
| 제6921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 33 |
| 제6922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4 |
| 제6923호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35 |
| 제6924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8 |
| 제6925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1 |
| 제692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3 |
| 제6927호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 43 |
| 제6928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46 |
| 제6929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9 |
| 제6930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0 |
| 제6931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51 |
| 제693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4 |
| 제6933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5 |

|                                                 |    |
|-------------------------------------------------|----|
| 제693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6 |
| 제693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7 |
| 제693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9 |
| 제6937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65 |

**[예 규]**

|                                              |    |
|----------------------------------------------|----|
| 제125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      | 76 |
| 제126호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 79 |

**[훈 령]**

|                                      |    |
|--------------------------------------|----|
| 제1014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 81 |
| 제1015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   | 83 |

**◆ 고 시**

|                                                                        |     |
|------------------------------------------------------------------------|-----|
| 제2018-314호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86  |
| 제2018-315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                 | 93  |
| 제2018-316호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96  |
| 제2018-317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105 |
| 제2018-318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                                           | 117 |
| 제2018-319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 117 |
| 제2018-3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 119 |

**◆ 공 고**

|                                                   |     |
|---------------------------------------------------|-----|
| 제2018-216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120 |
| 제2018-2176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인차인변경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121 |
| 제2018-2178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124 |
| 제2018-218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열람공고 ..... | 127 |
| 제2018-2190호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주요 개정사항 공고 .....        | 127 |
| 제2018-21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143 |
| 제2018-2214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지구외지구)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 144 |

**◆ 구 고 시**

|                                                      |     |
|------------------------------------------------------|-----|
| 제2018-1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 145 |
|------------------------------------------------------|-----|

|                                                  |     |
|--------------------------------------------------|-----|
| 제2018-110호 도시공원(소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 148 |
| 제2018-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 | 153 |
| 제2018-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부분) 공고(동작구) .....    | 155 |

### ◆ 구 공 고

|                                                                                 |     |
|---------------------------------------------------------------------------------|-----|
| 제2018-1022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br>(강북구) .....                 | 156 |
| 제2018-1298호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영등포구) ..                           | 159 |
| 제2018-15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br>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 | 160 |
| 제2018-1564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                            | 162 |
| 제2018-1387호 도시관리계획(위례성길, 삼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br>(송파구) .....                   | 164 |
| 제2018-138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br>(재)열람공고 (송파구) .....             | 165 |

### ◆ 사업소고시

|                                    |     |
|------------------------------------|-----|
| 제2018-2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 167 |
| 제2018-2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 167 |
| 제2018-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 168 |

### ◆ 사업소공고

|                                     |     |
|-------------------------------------|-----|
| 제2018-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성동소방서) ..... | 169 |
|-------------------------------------|-----|

### ◆ 기 타

|                                                           |     |
|-----------------------------------------------------------|-----|
| 제2018-24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170 |
| 제2018-24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br>..... | 170 |

### ◆ 정 정

|                                                                      |     |
|----------------------------------------------------------------------|-----|
| 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정사항 .....                     | 172 |
| 제2018-84호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승인 및 지형도면<br>고시 정정(동대문구고시) ..... | 173 |



## 자치법규

### [조 례]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3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1. 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임용한 사람
2. 비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시민단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3.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제8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② 청렴시민감사관 중 상근직은 제1항의 직무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접수·조사 포함)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민원의 조사·중재 및 조정 업무
4.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5.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 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회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연수)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제정이유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렴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을 정의함(제2조).

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함(제3조).

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라.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제5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폭염 및 폭설·황사·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 가.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나.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8호).  
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6항).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두며,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개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7조제1항 중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새문안로 55(신문로2가)에 두며” 를 “새문안로 55(신문로2가)에 두고” 로 하고, “위례성대로 71(방이동)에 둔다” 를 “위례성대로 71(방이동)에 두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에 둔다”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을 “남북협력추진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외협력담당관” 을 “남북협력담당관” 으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해 사회문화·경제협력 등 시정 전반의 교류협력사업 총괄 전담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나.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한 현안 추진체계 개편

- 안전총괄본부 물리적 보도환경 개선 기능을 도시교통본부 보행환경 개선과 일원화 함으로써 ‘보행 중심도시’ 서울 추진역량 강화

- 건설업 정책,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건설업 대금지급 관리 사무를통합하여, 안전총괄본부에 건설혁신 기능 명시적 부여

다. 서울공예박물관 체계적 운영(준비)을 위한 소속기관 신설

- 공예품수집·관리 등 개관 준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서울공예박물관(사업소) 신설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6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167명” 을 “18,23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16명” 을 “10,278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300명” 을 “310명” 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167” 을 “18,239” 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10,242” 를 “10,304” 로 한다.

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3급 | 18 | 8 |  | 1 | 9 |  |
|----|----|---|--|---|---|--|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4급 | 235 | 142 | 16 | 7 | 66 | 4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851” 을 “9,909” 으로 한다.

같은 표 별정직 계의 계란 중 “29” 를 “37” 로 한다.

같은 표 4급상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4급상당 | 5 | 3 | 2 |  |  |  |
|------|---|---|---|--|--|--|

같은 표 5급상당 이하 소계의 계란 중 “27” 을 “32” 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70” 을 “372” 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연구관 | 60 | 5 |  | 32 | 23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311” 을 “312”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39명으로 72명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증원(일반·연구직 +57명)

- 혁신성장 거점 조성 및 구축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증원(+18)
- 돌봄서비스 확대,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등 여성가족 분야 증원(+13)
-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및 교류협력 기능 활성화 인력보강(+13)
- 공예박물관 조성·운영, 협업 강화, 지진안전팀 신설 등 주요기능 보강(+13)

나. 정책결정 및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일반·별정직 +15명)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7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용역·자문”을 “용역·자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018. 12. 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변경(안 제3조의2)

나.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안 제2조) 등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8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만” 을 “1천” 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제1항 중 “9명” 을 “15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3항 중 “행정1부시장” 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 한다.

제1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 에서 “1천명 이상” 으로 확대(안 제7조)
- 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 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 변경(안 제11조)
-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 심의·자문 기대(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09호****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0호****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인을 포함하여 100인” 을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명과 감사 2명” 을 “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로, “호선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을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으로,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사무담당위원” 을 “사무담당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수립” 을 “사업계획 수립”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의2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원중” 을 “위원 중”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보건분과위원회” 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후변화·에너지” 를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로,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 을 “환경관련” 으로, “행사 추진” 을 “행사 추진 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 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보전” 으로, “관련” 을 “등에 관한” 으로, “정책개발” 을 “정책 개발”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이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을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녹색구매”를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8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제8조제3항 중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과위원회내”를 “소관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기타 협의회의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을 “10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제22조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을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기타 이 조례시행” 을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으로, “시장이 따로 규칙” 을 “규칙”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안 제4조)
- 나.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안 제4조, 제8조)
- 다.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제2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1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중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됨(안 제5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2호****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비고 보칙에 있던 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는 등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7조제3항)
-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7조의2)
- 다.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3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신설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청소년시설)에 개관 시설 추가 및 폐관 시설 삭제, 기존시설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별표 1(청소년시설) 신규 개관시설 신설, 기존시설 정보 수정

(1) 신설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 삭제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3) 수정 : 주소 변경, 시설의 기능 수정(문구), 시설종류 재분류

나. 제12조 앞에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삭제하고, 제14조 앞에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신설함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4호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

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친환경 학교급식” 을 “친환경학교급식” 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친환경유통센터)” 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제8조의3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의3제1항(중전의 제2항)제8호 중 “친환경유통센터” 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학교급식 고객” 을 “이용학교에 대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효율 결정 및 징수

제8조의3제3항은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 라고 되어 있음

나.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였기에,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의 ‘소유’ 로 정의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한다’ 라고 개정하여 사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 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 의 시설로 개정하여 중전의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고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나. 위탁형식에 맞게 종전의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를 방지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목, 제1항, 제2항)

- (1) 제목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으로 수정함
  - (2) 종전 제1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2항 중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로 하고 제1항으로 함
  - (3) 각 호의 업무 중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으로 하고,
  - (4)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료율 결정 및 징수’
  - (5)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위탁한다.’ 라고 신설, 종전의 제3항인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목 및 내용)
- ‘친환경 학교급식’ 을 ‘친환경학교급식’ 으로 함

### 3. 시의회 수정

#### 가. 수정내용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br>-----<br>-----.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 8. “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br>-----친환경 학교급식<br>-----<br>-----<br>---                                                                                                                                                                                                                        |                         |
|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br><br><신설><br><br>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br>1. ~ 7. (생략)<br><br>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br><br>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br><br>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br><br>11. · 12. (생략)<br><br>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품공사에 위탁한다. |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삭제><br><br>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품공사에 위탁한다.<br><br>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br>1. ~ 7. (현행과 같음)<br><br>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br>-----<br><br>9. (현황과 같음)<br><br>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br>요율 결정 및 징수<br><br>11. · 12. (현행과 같음)<br><br><삭제> | 9.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4. 검토의견

- 가. 이원화가 된 ‘식재료 공급’ 을 농수산물공사의 기능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된 것이고
- 나.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 다.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6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시계(시계)경관지구”를 “시계경관지구”로 한다.

제8조의2 제목 “(미관지구의 세분)”을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로 한다.

제27조제1호차목 중 “1천제곱미터”를 “5백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자동차영업소 및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을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41조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수변경관지구”를 각각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하고, 제44조를 제43조로 하며,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중전의 제44조) 제목 “(용도제한)” 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 을 “영 제72조제1항” 으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를 “시가지경관지구”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및 제8호” 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 로, “미관지구” 를 “시가지경관지구” 로 한다.

제44조 앞의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을 삭제한다.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궁궐·성·왕릉 등 면단위지정문화재 또는 근현대 건축물·사적지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주변지역으로서 역사 또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 한옥밀집지역으로서 한옥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를 “건축(경관)위원회”로, “미관상”을 “경관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미관”을 “경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미관도로변”을 “경관도로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3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3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한다.

제47조 앞의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에 “제3절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한다.

제50조 앞의 “제5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한다.

제50조 앞에 “제4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한다.

제54조 앞의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신설한다.

제55조의2 앞의 “제7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삭제한다.

제55조의2 앞에 “제6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신설한다.

제55조의3 앞의 “제8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55조의3 앞에 “제7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신설한다.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4.18.)」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4.19.)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미관지구    | 경관지구          |
|-------------|---------------|
|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2. 일반미관지구   |               |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 4. 조망가로미관지구 | 3.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4.18.)」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4.19.)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제7조제1항제1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제33조제2호 전단 중 “상업지역·미관지구”를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를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가목 중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를 “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최고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의 조문 등을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특화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기존의 미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명칭 재편(안 제8조의2)
-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고,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9조의3)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 면적 조정(안 제27조, 제29조)
- 중심지·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 중심지·일반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함(안 제43조, 제46조)
-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대체하고, 지정대상을 규정(안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3)
- 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근거 마련(안 제45조제3항)
- 미관지구 명칭을 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대체(안 별표 4 제3항)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7호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 2. 주요내용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4)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8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나. 그 밖에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탈자, 약칭 및 문장부호 등 조문을 정비함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19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 2. 주요내용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의2)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정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 타.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 파.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 하.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3호 중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라목 신설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기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1호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2호****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아동학대 방지 등” 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 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를 삽입하고,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 발생과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 적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안전과 급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시장이 이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신설(안 제19조의2)
- 나.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신설(안 제19조의3)
- 다. 차량·급식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현행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 로 변경(안 제5장)
- 라. 현행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포괄하고자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를 신설(안 제6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3호****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



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시에 소재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경영·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물류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대표
3.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표
4. 남북한 교류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전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하여, 시내 전시·판매·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 내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한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 및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도록 함(안 제11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4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3조의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용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용자상환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된 기금의 회수금

③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과 제5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같다.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며,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한다.

1. 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3.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③ 시장은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 을 “소상공인지원과장(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3호 중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 을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을 “각 계정별로 구성·운영하되, 계정별로 위원장” 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계정: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제18조의 조명을 “업무의 위탁” 에서 “업무의 대행” 으로 하고, 제18조 본문중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 (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에 그” 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로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를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 조명을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에서 “(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 을 “대행하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으로 하며, 제21조제2항 중 “금융기관 등” 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으로, “금융기관등” 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따라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계정의 신설, 출자대상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기존의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의 변경(안 제1조)
- 나.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용자계정 및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안 제3조의3, 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반영하여 출자대상 확대(안 제5조)
- 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근거, 절차, 검사 규정 등을 개정(안 제18조, 안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5호****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경제기획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를 인용하여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지출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며,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산학연협력사업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출연’에서 ‘출연’ 또는 ‘보조’로 변경함(안 제17조)

나.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07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나.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부칙 <제6071호, 2016. 1. 7.> 제2조)을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7호**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 지침)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정거래 지원센터)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3.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1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리랜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8호****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제11조)

라.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29호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市 거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0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는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의2제1항)

나. 안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1호****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 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 야기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

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가. 의료관광업(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이며 급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임
- 나. 현재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은 미비한 실정임
- 다.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나.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제9조)
- 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안 제10조~12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2호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본문 중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를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바, 체육진흥 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3호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안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나.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4호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도로·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로, “고장”을 “고장·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도로(차도, 보도)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록 파손, 포토홀 등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에 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도로를 포함 (안 제48조제1항)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5호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

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다음 표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 등급 | 기 준                                                      |
|----|----------------------------------------------------------|
| 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
| 양호 |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
| 보통 |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
| 미흡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54만여동)의 경우는 구조적 안전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할 뿐,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축안전센터는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 나. 안전점검은 현장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폭이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2. “청년주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3.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4.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3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5.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을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시행자)” 를 “(사업시행자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사업자” 를 “공공주택사업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를 “시행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자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사업시행자는” 을 “사업시행자등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사업대상지’ ” 를 “ ‘사업대상지’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2.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

제5조제4항 본문 중 “통합심의위원회” 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대상지내” 를 각각 “사업대상지 내” 로 한다.

제6조제1호 전단 중 “건축허가.” 를 “건축” 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계획승인” 을 “주택건설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2.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3.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청년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 ④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중 “추진시” 를 “추진 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 를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를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 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상일 경우” 를 “대상인 경우:” 로, “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을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 각 호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중 “사업시행자는” 을 “사업시행자등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가” 를 “사업계획이”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축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사업계획 허가시” 를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보에 고시하고 자치구청장” 을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 으로, “자치구청장은” 을 “구청장은” 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7조제2항” 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제1항” 을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특례

②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로, “적용 할” 을 “적용할”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8.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로,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 임대료”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바”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자에 한한다”를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의 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제20조제2항제2호 중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행 한다”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출석 위원에 해당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시행(’18. 7. 17.)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정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사업시행자를 촉진지구 지정 대상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사업제안자로 구분하여 그 세부자격을 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사업계획의 취소 여부, 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촉진지구 지정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 및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 라. 사업부지가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안 제5조제3항),
- 마. 사업유형별 대상 위원회를 세분함(안 제5조 및 제12조).
- 바. 사업유형의 규정방식을 정비하고, 추진되지 않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삭제함(안 제6조).
- 사. 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업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 시장에게 공공기여 해야 하는 비율을 정함(안 제7조제3항),
- 아.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자. 사업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추가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소위원회 자문·심의사항을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함.

####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7호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자”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민간협력 지원”이란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란 화재피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4.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이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 ①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2.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3.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4.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5.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자는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관할소방서장(이하 “관할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간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화재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5.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수사·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조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조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타법에 의한 조정·재정·중재 등이 진행될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조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전 합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조서

[별지 제6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 배상, 정보공개요청 증가 등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피해지원 업무의 법제화 및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한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피해자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안 제5조)
- 라.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안 제7조)
- 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자.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의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차.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별지 제4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전 합의서**

|                                                                                                                |     |      |     |  |
|----------------------------------------------------------------------------------------------------------------|-----|------|-----|--|
| 건 명                                                                                                            |     |      |     |  |
| 신청인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
|                                                                                                                | 주 소 |      |     |  |
| 당사자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
|                                                                                                                | 주 소 |      |     |  |
| 합 의<br>내 용                                                                                                     |     |      |     |  |
| 합의일                                                                                                            |     |      |     |  |
| <p>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당사자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br/>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b>서울특별시장</b></p> |     |      |     |  |

〈별지 제5호 서식〉

## 화재피해분쟁조정 조서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
|                                        | 주 소 |      |     |  |
| 당사자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
|                                        | 주 소 |      |     |  |
| 조정위원회                                  | 개최일 |      | 장 소 |  |
|                                        | 위원장 | (서명) | 연락처 |  |
|                                        | 위 원 |      |     |  |
| 건 명                                    |     |      |     |  |
| 분 쟁<br>내 용                             |     |      |     |  |
| 조 정<br>내 용                             |     |      |     |  |
| 처 리<br>결 과                             |     |      |     |  |
| ※ 불임자료<br>○ 회의록, 사진, 영상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     |      |     |  |

<별지 제6호 서식>

###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 연번 | 접수<br>일자 | 신청 · 접수 |    |     |          |     | 합의권고     |          | 분쟁조정 신청  |     |    |     | 조정위원회    |          |          | 비고 |
|----|----------|---------|----|-----|----------|-----|----------|----------|----------|-----|----|-----|----------|----------|----------|----|
|    |          | 신청인     |    |     | 신청<br>내용 | 접수자 | 권고<br>내용 | 합의<br>결과 | 신청<br>일자 | 당사자 |    |     | 개최<br>일자 | 조정<br>내용 | 조정<br>결과 |    |
|    |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          |          |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25호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일전까지회의안건”을 “3일 전까지 회의안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연구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책연구위원증”을 “정책위원회 위원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전면)의 “정책연구위원증”을 “정책위원회 위원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후면)의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 3705-1169”를 “☎ 2180-7902”로 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u></p> <p>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u>정책연구위원회</u>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해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중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한 해축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의회 <u>정책연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를 말한다.</p> <p>제4조(소위원회 회의) ①·② (생략)</p> <p>③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u>3일전까지회의안건</u>,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⑤ (생략)</p> <p>제7조(의견 제출 및 안건 발의)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u>정책연구위원</u>, 공무원 및 시민 등은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위원증 발부) ①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u>정책연구위원증</u>(이하 "</p> | <p><u>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u></p> <p>제1조(목적)-----<br/>-----<u>정책위원회</u>-----<br/>-----<br/>-----<u>정책위원회</u>-----<br/>-----.</p> <p>제2조(해축) 「서울특별시의회 <u>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u>」<br/>-----<br/>-----<br/><u>정책위원회</u>-----<br/>-----.</p> <p>제4조(소위원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 <u>3일 전까지 회의안건</u>-----<br/>-----.</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견 제출 및 안건 발의) ①-----<br/>-----<u>위원회 위원</u>-----<br/>-----<br/>-----.</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증 발부) ①-----<br/>-----<br/><u>정책위원회 위원증</u>-----</p> |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별지 서식]

(전면)



**정책연구위원증**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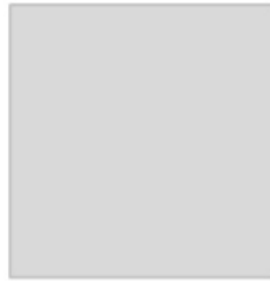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정책위원회 위원증**



○ ○ ○

**서울특별시의회**

(후면)

**위원증의 발급 및 사용**

○ 소속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 임기 : 20 . . ~ 20 . .

- 이 증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임을 증명함.
- 이 증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출입 등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증의 유효기간은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후 사용은 불가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3705-1169)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위원증의 발급 및 사용**

○ 소속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 임기 : 20 . . ~ 20 . .

- 이 증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함.
- 이 증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출입 등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증의 유효기간은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후 사용은 불가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2180-790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개정(2018.1.4.)으로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연구회’로 변경함(법규명,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별지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26호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신 원 철 인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14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482명” 을 “507명”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6조 관련)**

| 부 서 별     | 합계  |
|-----------|-----|
| 총계        | 507 |
| 본청        | 81  |
| 민방위담당관    | 2   |
| 총무과       | 69  |
| 교량안전과     | 9   |
| 일자리정책담당관  | 1   |
| 직속기관      | 27  |
| 보건환경연구원   | 8   |
| 인재개발원     | 4   |
| 서울종합방재센터  | 9   |
| 소방학교      | 6   |
| 사업소       | 398 |
| 상수도사업본부   | 99  |
| 한강사업본부    | 156 |
| 데이터센터     | 2   |
| 시립어린이병원   | 4   |
| 시립서북병원    | 4   |
| 시립은평병원    | 3   |
| 교통 방송     | 8   |
| 시립미술관     | 3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49  |
| 동부도로사업소   | 1   |
| 서부도로사업소   | 1   |
| 남부도로사업소   | 1   |
| 북부도로사업소   | 1   |
| 성동도로사업소   | 1   |
| 강서도로사업소   | 1   |
| 중랑물 재생센터  | 7   |
| 난지물 재생센터  | 9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2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4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33  |
| 서울식물원     | 9   |
| 의회사무처     | 1   |
| 의회사무처     | 1   |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청원경찰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정원책정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총정원을 482명에서 507명으로 25명 증원 조정(안 제6조)

나. 기관별 청원경찰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1)

- (1) (서울식물원) 청원경찰 9명 배정
- (2) (일자리정책담당관) 청원경찰 1명 배정
- (3) (보건환경연구원) 청원경찰 2명 증원(6명 → 8명)
- (4) (인재개발원) 청원경찰 1명 증원(3명 → 4명)
- (5) (시립어린이병원) 청원경찰 1명 증원(3명 → 4명)
- (6) (시립은평병원) 청원경찰 1명 증원(2명 → 3명)
- (7) (교통 방송) 청원경찰 2명 증원(6명 → 8명)
-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4명 증원(45명 → 49명)
-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청원경찰 1명 증원(3명 → 4명)
-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청원경찰 6명 증원(27명 → 33명)
- (11) (교량안전과) 청원경찰 3명 감원(12명 → 9명)

## ◆ 서울특별시훈령 제1015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

나. 가목의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2.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보상”이란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결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결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5. “공원 간 연결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분절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6.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공원관리 및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7. “잔여 사유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속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같은 표에 따른 자치구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 순위)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하며, 물건 및 권리의 보상 순위는 해당 물건 및 권리가 속하는 토지의 보상 순위를 따른다.

1. 1순위 : 우선보상 대상지
2. 2순위 : 공원 간 연결 토지
3. 3순위 :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4. 4순위 : 잔여 사유 토지

제5조(보상예산 신청) 시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

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해당 공원의 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의 신청 없이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보상여부 검토 및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예산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4조의 보상 순위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보상여부 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보상 예산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등”, “보상”, “우선보상 대상지”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에 보조하는 경우에 적용(준용)함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순위를 정함(안 제4조)

마.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으로부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하되, 필요시 시장이 신청 없이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시장은 토지 등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상예산 신청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고 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4호

####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90호(2017.3.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된 동빙고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동빙고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골프연습장 철거 후 넓은 녹지 및 청소년수련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어린이·청소년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번지 일대

#### 3. 공원면적 : 55,740.70㎡

#### 4. 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0) 및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603)

### 동방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번지 일대)

| 구 분                |     | 변 경 전                    |                                      |           |             |            | 변 경 후      |                          |                                      |           |             | 비 고      |            |                         |
|--------------------|-----|--------------------------|--------------------------------------|-----------|-------------|------------|------------|--------------------------|--------------------------------------|-----------|-------------|----------|------------|-------------------------|
|                    |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건 축 물     |             |            | 공작물<br>(기)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건 축 물     |             |          | 공작물<br>(기) |                         |
|                    |     |                          |                                      | 동수<br>(동) | 비대면적<br>(㎡) | 연면적<br>(㎡) |            |                          |                                      | 동수<br>(동) | 비대면적<br>(㎡) |          |            | 연면적<br>(㎡)              |
| 계                  |     | 26,849.00<br>(55,740.70) | 10,641.87                            | 2         | 2,125.51    | 7,521.52   | 56         | 26,849.00<br>(55,740.70) | 10,641.87                            | 2         | 2,120.41    | 7,589.22 | 74         | 시설면적<br>변동없음<br>(증 18기) |
| 기<br>반<br>사<br>설   | 소 계 | 4,411.41                 | 4,411.41                             |           |             |            |            | 4,388.99                 | 4,388.99                             |           |             |          |            | 감 22.42㎡                |
|                    | 도 로 | 3,280.92                 | 3,280.92                             |           |             |            |            | 3,369.24                 | 3,369.24                             |           |             |          |            | (증 88.32㎡)              |
|                    | 광장  | 1,130.49                 | 1,130.49                             |           |             |            |            | 1,019.75                 | 1,019.75                             |           |             |          |            | (감 110.74㎡)             |
| 조 경 시 설            |     | 1,750.99                 | 1,750.99                             |           |             |            |            | 1,767.94                 | 1,767.94                             |           |             |          |            | 증 16.95㎡                |
| 유 희 시 설            |     | 1,355.78                 | 1,355.78                             |           |             |            | 2          | 1,339.49                 | 1,339.49                             |           |             |          | 2          | 감 16.29㎡                |
| 휴 양 시 설            |     | 787.19                   | 787.19                               |           |             |            | 9          | 813.05                   | 813.05                               |           |             |          | 11         | 증 25.86㎡<br>(증 2기)      |
| 교 양 시 설            |     | 1,386.49                 | 1,386.49                             | 1         | 1,386.49    | 6,551.18   |            | 1,377.68                 | 1,377.68                             | 1         | 1,377.68    | 6,643.49 |            | 감 8.81㎡                 |
| 운 동 시 설            |     | 739.02                   | 739.02                               | 1         | 739.02      | 970.34     |            | 742.73                   | 742.73                               | 1         | 742.73      | 945.73   |            | 증 3.71㎡                 |
| 편 익 시 설            |     | 210.99                   | 210.99                               |           |             |            |            | 211.99                   | 211.99                               |           |             |          |            | 증 1.00㎡                 |
| 관 리 시 설            |     |                          |                                      |           |             |            | 45         |                          |                                      |           |             |          | 61         | 증 16기                   |
| 녹 지                |     | 16,207.13                |                                      |           |             |            |            | 16,207.13                |                                      |           |             |          |            | 녹지율=60.36%              |
| 기 타                |     | 28,891.70                |                                      |           |             |            |            | 28,891.70                |                                      |           |             |          |            | 도시계획시설<br>(도로) 중복지정     |
| 시 설 률<br>(법정40%이하) |     | 공원전체                     | (10,641.87/55,740.70) x 100 = 19.09% |           |             |            |            | 공원전체                     | (10,641.87/55,740.70) x 100 = 19.09% |           |             |          |            |                         |
|                    |     | 민간공원                     | (10,641.87/26,849.00) x 100 = 39.63% |           |             |            |            | 민간공원                     | (10,641.87/26,849.00) x 100 = 39.63% |           |             |          |            |                         |
| 건 폐 율<br>(법정15%이하) |     | 공원전체                     | (2,125.51/55,740.70) x 100 = 3.81%   |           |             |            |            | 공원전체                     | (2,120.41/55,740.70) x 100 = 3.80%   |           |             |          |            |                         |
| 건 폐 율<br>(법정15%이하) |     | 민간공원                     | (2,125.51/26,849.00) x 100 = 7.91%   |           |             |            |            | 민간공원                     | (2,120.41/26,849.00) x 100 = 7.90%   |           |             |          |            |                         |

## 2. 시설조서

| 구 분      |        | 변 경 전                         |                                                                                           |                                                      |                                                      |          |    |          |          |            | 변 경 후                         |                                                                                          |                                                     |                                                     |          |    |          |          |            | 비 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br>(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br>(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합 계      |        |                               |                                                                                           | 26,849.00<br>(55,740.70)                             | 10,641.87                                            |          | 2  | 2,125.51 | 7,521.52 | 56         |                               |                                                                                          | 26,849.00<br>(55,740.70)                            | 10,641.87                                           |          | 2  | 2,120.41 | 7,589.22 | 74         | 시설면적<br>변동없음 |
| 기반<br>시설 | 계      |                               |                                                                                           | 4,411.41                                             | 4,411.41                                             |          |    |          |          |            |                               |                                                                                          | 4,388.99                                            | 4,388.99                                            |          |    |          |          |            | 감 22.42㎡     |
|          | 산책로    | 산                             | 69-162<br>(17개소)<br>69-163<br>(17개소)                                                      | 3280.92                                              | 3280.92                                              |          |    |          |          |            | 산                             | 69-162<br>(17개소)<br>69-163<br>(19개소)                                                     | 3,369.24                                            | 3,369.24                                            |          |    |          |          |            | (증 88.32㎡)   |
|          | 광장     | 가<br>가-1<br>가-2<br>가-3<br>가-4 | 4개소<br>69-162<br>(569.36)<br>69-163<br>(38.07)<br>69-163<br>(162.83)<br>69-163<br>(63.09) | 833.35<br>(569.36)<br>(38.07)<br>(162.83)<br>(63.09) | 833.35<br>(569.36)<br>(38.07)<br>(162.83)<br>(63.09) |          |    |          |          |            | 가<br>가-1<br>가-2<br>가-3<br>가-4 | 4개소<br>69-162<br>(584.23)<br>69-163<br>(7.23)<br>69-163<br>(118.16)<br>69-163<br>(50.00) | 759.62<br>(584.23)<br>(7.23)<br>(118.16)<br>(50.00) | 759.62<br>(584.23)<br>(7.23)<br>(118.16)<br>(50.00) |          |    |          |          |            | (감 73.73㎡)   |
|          |        | 나                             | 69-163                                                                                    | 297.14                                               | 297.14                                               |          |    |          |          |            | 나                             | 69-163                                                                                   | 260.13                                              | 260.13                                              |          |    |          |          |            | (감 37.01㎡)   |
|          |        | 계                             |                                                                                           |                                                      | 1,750.99                                             | 1,750.99 |    |          |          |            | 2                             |                                                                                          |                                                     | 1,767.94                                            | 1,767.94 |    |          |          |            |              |
| 조경<br>시설 | 목재데크   | 다-1                           | 69-162                                                                                    | 125.43                                               | 125.43                                               |          |    |          |          |            | 다-1                           | 69-162                                                                                   | 340.98                                              | 340.98                                              |          |    |          |          |            | 증 215.55㎡    |
|          | 관상식수대  | 다-2                           | 공원전역                                                                                      | 653.9                                                | 653.9                                                |          |    |          |          |            | 다-2                           | 공원전역                                                                                     | 487.82                                              | 487.82                                              |          |    |          |          |            | 감 166.08㎡    |
|          | 놀이마당   | 다-3                           | 69-162                                                                                    | 840                                                  | 840                                                  |          |    |          |          |            | 다-3                           | 69-162                                                                                   | 774                                                 | 774                                                 |          |    |          |          |            | 감 66.00㎡     |
|          | 앉음벽1   | ①                             | 공원전역                                                                                      | 27.79                                                | 27.79                                                |          |    |          |          |            | ①                             | 공원전역                                                                                     | 106.37                                              | 106.37                                              |          |    |          |          |            | 증 78.58㎡     |
|          | 앉음벽2   | ②                             | 69-162                                                                                    | 62.76                                                | 62.76                                                |          |    |          |          |            | ②                             | 69-162                                                                                   | 24.01                                               | 24.01                                               |          |    |          |          |            | 감 38.75㎡     |
|          | 장식벽    | ③                             | 69-162                                                                                    | 15.91                                                | 15.91                                                |          |    |          |          |            | ③                             | 69-162                                                                                   | 11.69                                               | 11.69                                               |          |    |          |          |            | 감 4.22㎡      |
|          | 앉음벽3   | ④                             | 69-162                                                                                    | 25.2                                                 | 25.2                                                 |          |    |          |          |            | ④                             | 69-162                                                                                   | 23.07                                               | 23.07                                               |          |    |          |          |            | 감 2.13㎡      |
| 유치<br>시설 | 계      |                               |                                                                                           | 1,355.78                                             | 1,355.78                                             |          |    |          |          | 2          |                               |                                                                                          | 1,339.49                                            | 1,339.49                                            |          |    |          |          | 2          | 감 16.29㎡     |
|          | 어린이놀이터 | 마-1                           | 69-162                                                                                    | 689.12                                               | 689.12                                               |          |    |          |          |            | 마-1                           | 69-162                                                                                   | 902.64                                              | 902.64                                              |          |    |          |          |            | 증 213.52㎡    |
|          | 유아놀이터  | 마-2                           | 69-163                                                                                    | 666.66                                               | 666.66                                               |          |    |          |          |            | 마-2                           | 69-163                                                                                   | 436.85                                              | 436.85                                              |          |    |          |          |            | 감 229.81㎡    |
|          | 마운딩놀이대 | ⑧                             | 69-162                                                                                    |                                                      |                                                      |          |    |          |          | 1          | ⑧                             | 69-162                                                                                   |                                                     |                                                     |          |    |          |          | 1          |              |
|          | 유아놀이대  | ⑨                             | 69-163                                                                                    |                                                      |                                                      |          |    |          |          | 1          | ⑨                             | 69-163                                                                                   |                                                     |                                                     |          |    |          |          | 1          |              |

| 구 분           |             | 변 경 전           |                         |                               |                               |    |     |          |          |            | 변 경 후           |                         |                                |                                |     |          |          |          |            | 비 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br>(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br>(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휴양<br>시설      | 계           |                 |                         | 787.19                        | 787.19                        |    |     |          |          | 9          |                 |                         | 813.05                         | 813.05                         |     |          |          |          | 11         | 증 25.86㎡               |
|               | 휴게소         | 라<br>라-1<br>라-2 | 3개소<br>69-162<br>69-163 | 787.19<br>(719.72)<br>(67.47) | 787.19<br>(719.72)<br>(67.47) |    |     |          |          |            | 라<br>라-1<br>라-2 | 3개소<br>69-162<br>69-163 | 813.05<br>(678.11)<br>(134.94) | 813.05<br>(678.11)<br>(134.94) |     |          |          |          |            | 증 25.86㎡               |
|               | 휴게시설1       | ⑤               | 69-162                  |                               |                               | 목재 |     |          | 1        | ⑤          | 69-162          |                         |                                | 목재                             |     |          |          |          | 4          | 증 3개                   |
|               | 휴게시설 2      | ⑥               | 69-162                  |                               |                               | 목재 |     |          | 4        | ⑥          | 69-162          |                         |                                | 목재                             |     |          |          |          | 3          | 감 1개                   |
|               | 평의자         | ⑦               | 공원전역                    |                               |                               | 목재 |     |          | 4        | ⑦          | 공원전역            |                         |                                | 목재                             |     |          |          |          | 4          |                        |
| 교양<br>시설      | 계           |                 |                         | 1,386.49                      | 1,386.49                      |    | 1   | 1,386.49 | 6,551.18 |            |                 |                         | 1,377.68                       | 1,377.68                       |     | 1        | 1,377.68 | 6,643.49 |            | 감 8.81㎡                |
|               | 청소년<br>수련시설 | 2               | 69-163                  | 1,386.49                      | 1,386.49                      |    | 1   | 1,386.49 | 6,551.18 | 2          | 69-163          | 1,377.68                | 1,377.68                       |                                | 1   | 1,377.68 | 6,643.49 |          | 감 8.81㎡    |                        |
|               | 국공립어린이집     | 2               | 69-163                  | (732.30)                      | (732.30)                      |    | (1) | (732.30) | (732.30) | 2          | 69-163          | (737.12)                | (737.12)                       |                                | (1) | (737.12) | (737.12) |          |            |                        |
| 운동<br>시설      | 계           |                 |                         | 739.02                        | 739.02                        |    | 1   | 739.02   | 970.34   |            |                 |                         | 742.73                         | 742.73                         |     | 1        | 742.73   | 945.73   |            | 증 3.71㎡                |
|               | 체육관         | 1               | 69-163                  | 739.02                        | 739.02                        |    | 1   | 739.02   | 970.34   | 1          | 69-163          | 742.73                  | 742.73                         |                                | 1   | 742.73   | 945.73   |          | 증 3.71㎡    |                        |
| 편익<br>시설      | 계           |                 |                         | 210.99                        | 210.99                        |    |     |          |          |            |                 |                         | 211.99                         | 211.99                         |     |          |          |          |            | 증 1.00㎡                |
|               | 주차장         | 바               | 69-163                  | 210.99                        | 210.99                        |    | 1   | 30.00    | 30.00    | 바          | 69-163          | 211.99                  | 211.99                         |                                |     |          |          |          |            | 증 1.00㎡                |
| 관리<br>시설      | 계           |                 |                         |                               |                               |    |     |          |          | 45         |                 |                         |                                |                                |     |          |          |          | 61         | 증 16기                  |
|               | 조명시설        | ⑩               | 공원전역                    |                               |                               |    |     |          |          | 27         | ⑩               | 공원전역                    |                                |                                |     |          |          |          | 43         | 증 16기                  |
|               | 안내판         | ⑪               | 공원전역                    |                               |                               |    |     |          |          | 9          | ⑪               | 공원전역                    |                                |                                |     |          |          |          | 9          |                        |
|               | CCTV        | ⑫               | 공원전역                    |                               |                               |    |     |          |          | 9          | ⑫               | 공원전역                    |                                |                                |     |          |          |          | 9          |                        |
| 녹지<br>및<br>기타 | 계           |                 |                         | 16,207.13                     |                               |    |     |          |          |            |                 |                         | 16,207.13                      |                                |     |          |          |          |            |                        |
|               | 녹지          |                 | 공원전역                    | 16,207.13                     |                               |    |     |          |          |            |                 | 공원전역                    | 16,207.13                      |                                |     |          |          |          |            |                        |
|               | 기타          |                 |                         | 28,891.70                     |                               |    |     |          |          |            |                 |                         | 28,891.70                      |                                |     |          |          |          |            | 도시계획<br>시설(도로)<br>충북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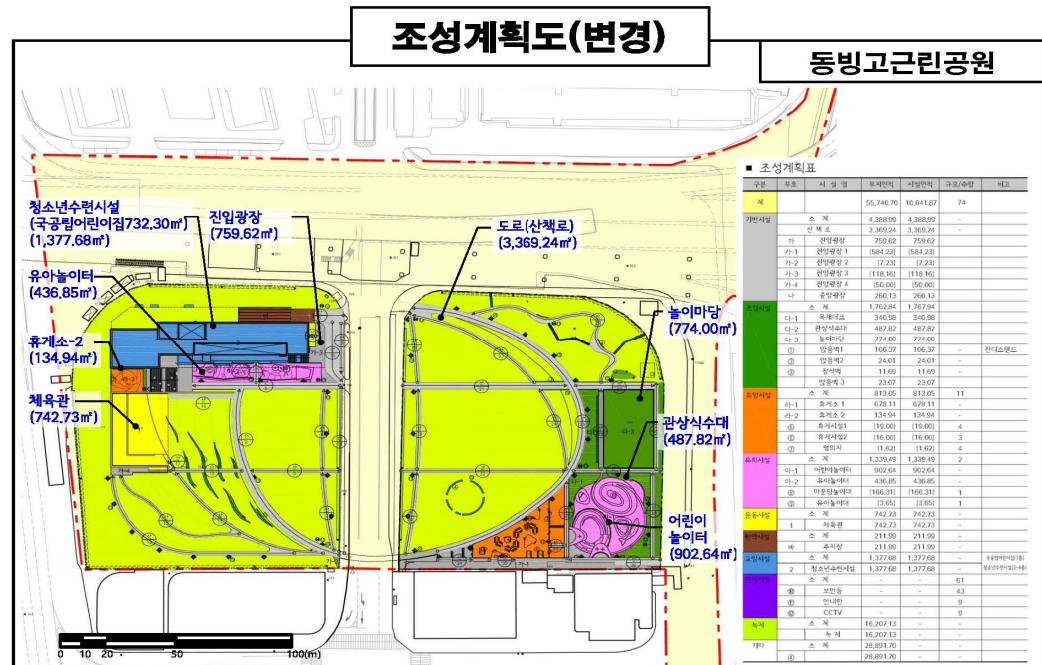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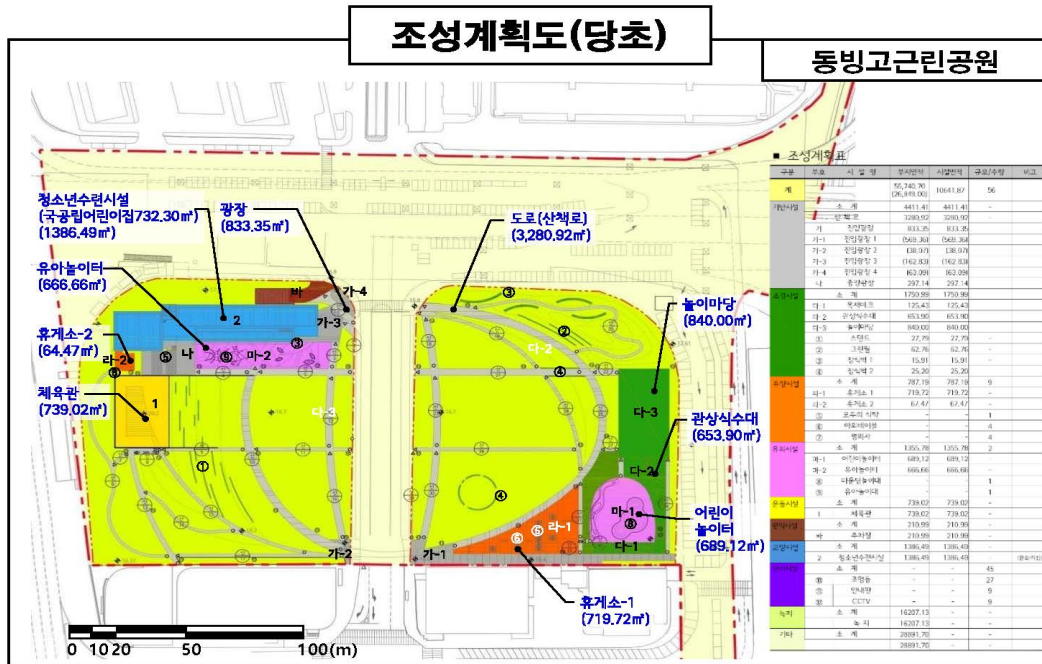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연장<br>(m)          | 면적<br>(㎡)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 합 계 |     |            |               | 1,555.3            | 3,280.92             |                  |                   |    | 연장:증<br>120.1m<br>면적:증<br>88.32㎡ |
| 변경       |     |     |            |               | 1,675.4            | 3,369.24             |                  |                   |    |                                  |
| 당초<br>변경 |     | 소 계 |            |               | 1,555.3<br>1,675.4 | 3,280.92<br>3,369.24 |                  |                   |    |                                  |
| 당초<br>변경 | -   | 1   | 3.0<br>6.0 | 24.3<br>11.8  | 72.78<br>71.19     | 산책로                  | 69-170<br>69-170 | 주차장<br>주차장        |    |                                  |
| 당초<br>변경 | -   | 2   | 3.0<br>1.2 | 13.1<br>2.3   | 39.25<br>2.76      | 산책로                  | 69.170<br>69-170 | 진입광장 3<br>청소년수련시설 |    |                                  |
| 당초<br>변경 | -   | 3   | 3.0<br>1.5 | 12.1<br>24.6  | 36.29<br>37.02     | 산책로                  | 산책로3<br>산책로 1    | 진입광장 3<br>산책로 15  |    |                                  |
| 당초<br>변경 | -   | 4   | 3.0<br>2.0 | 22.0<br>8.5   | 65.97<br>17.14     | 산책로                  | 산책로10<br>산책로 5   | 중앙광장<br>청소년수련시설   |    |                                  |
| 당초<br>변경 | -   | 5   | 3.0<br>3.0 | 39.2<br>61.2  | 117.62<br>183.82   | 산책로                  | 69-170<br>산책로 14 | 산책로 10<br>중앙광장    |    |                                  |
| 당초<br>변경 | -   | 6   | 1.2<br>1.5 | 106.7<br>38.4 | 128.09<br>57.73    | 산책로                  | 산책로 13<br>산책로 9  | 관상식수대 2<br>산책로 5  |    |                                  |
| 당초<br>변경 | -   | 7   | 1.5<br>1.5 | 10.8<br>37.6  | 16.20<br>56.45     | 산책로                  | 산책로 13<br>산책로 8  | 산책로 6<br>산책로 9    |    |                                  |
| 당초<br>변경 | -   | 8   | 1.5<br>3.0 | 10.5<br>99.4  | 15.78<br>298.34    | 산책로                  | 산책로 15<br>69-170 | 산책로 13<br>산책로 5   |    |                                  |
| 당초<br>변경 | -   | 9   | 1.5<br>1.5 | 34.7<br>37.1  | 51.98<br>55.76     | 산책로                  | 산책로 10<br>산책로 14 | 산책로 15<br>산책로 8   |    |                                  |
| 당초<br>변경 | -   | 10  | 3.0<br>1.2 | 111.6<br>30.7 | 334.92<br>46.10    | 산책로                  | 진입광장 2<br>산책로 8  | 유아놀이터<br>체육관      |    |                                  |
| 당초<br>변경 | -   | 11  | 1.5<br>1.5 | 40.4<br>74.9  | 60.67<br>112.37    | 산책로                  | 69-170<br>산책로 8  | 산책로 10<br>산책로 10  |    |                                  |
| 당초<br>변경 | -   | 12  | 3.0<br>1.2 | 32.7<br>65.5  | 98.01<br>78.70     | 산책로                  | 산책로 11<br>산책로 11 | 산책로 5<br>진입광장 4   |    |                                  |
| 당초<br>변경 | -   | 13  | 2.0<br>1.5 | 64.2<br>100.0 | 128.3<br>150.01    | 산책로                  | 69-170<br>산책로 11 | 산책로 15<br>진입광장 4  |    |                                  |
| 당초<br>변경 | -   | 14  | 1.2<br>0.8 | 52.0<br>74.4  | 62.45<br>59.55     | 산책로                  | 산책로 15<br>산책로 8  | 산책로 13<br>산책로 15  |    |                                  |
| 당초<br>변경 | -   | 15  | 1.5<br>6.0 | 86.0<br>26.7  | 129.04<br>160.52   | 산책로                  | 산책로 17<br>산책로 1  | 체육관<br>69-170     |    |                                  |
| 당초<br>변경 | -   | 16  | 3.0<br>2.5 | 40.3<br>27.4  | 120.95<br>68.64    | 산책로                  | 진입광장 2<br>산책로 8  | 산책로 11<br>체육관     |    |                                  |
| 당초<br>변경 | -   | 17  | 1.5<br>1.5 | 69.3<br>4.5   | 103.98<br>6.75     | 산책로                  | 진입광장 2<br>산책로 10 | 산책로 13<br>체육관     |    |                                  |
| 당초<br>변경 | -   | 18  | 3.0<br>1.5 | 24.1<br>34.7  | 72.29<br>52.19     | 산책로                  | 산책로 21<br>산책로 21 | 산책로 19<br>체육관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연장<br>(m)      | 면적<br>(㎡)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br>변경 | 산<br>책<br>로 | -  | 19 | 1.5<br>1.5 | 61.3<br>38.5   | 91.98<br>57.80   | 산책로 | 산책로 21<br>산책로 22 | 69-170<br>산책로 21 |    |
| 당초<br>변경 |             | -  | 20 | 1.2<br>1.5 | 118.1<br>39.4  | 141.7<br>59.12   | 산책로 | 산책로 25<br>진입광장 1 | 산책로 25<br>산책로 22 |    |
| 당초<br>변경 |             | -  | 21 | 3.0<br>3.0 | 69.5<br>68.9   | 208.43<br>206.86 | 산책로 | 산책로 25<br>69-170 | 69-170<br>산책로 25 |    |
| 당초<br>변경 |             | -  | 22 | 3.0<br>1.5 | 11.1<br>69.2   | 33.21<br>103.84  | 산책로 | 휴게소 2<br>69-170  | 산책로 25<br>산책로 25 |    |
| 당초<br>변경 |             | -  | 23 | 3.0<br>1.5 | 32.6<br>69.0   | 97.75<br>103.58  | 산책로 | 산책로 26<br>산책로 21 | 산책로 21<br>산책로 18 |    |
| 당초<br>변경 |             | -  | 24 | 1.5<br>1.5 | 46.3<br>38.0   | 69.44<br>57.14   | 산책로 | 산책로 25<br>산책로 25 | 산책로 21<br>산책로 21 |    |
| 당초<br>변경 |             | -  | 25 | 3.0<br>3.0 | 199.6<br>191.3 | 598.94<br>574.13 | 산책로 | 진입광장 1<br>진입광장 1 | 69-170<br>69-170 |    |
| 당초<br>변경 |             | -  | 26 | 1.5<br>1.5 | 67.8<br>110.7  | 101.71<br>166.10 | 산책로 | 산책로 24<br>산책로 27 | 69-170<br>산책로 25 |    |
| 당초<br>변경 |             | -  | 27 | 1.5<br>3.0 | 7.2<br>32.8    | 10.78<br>98.54   | 산책로 | 휴게소 2<br>산책로 25  | 산책로 25<br>산책로 29 |    |
| 당초<br>변경 |             | -  | 28 | 2.0<br>1.5 | 8.7<br>35.9    | 17.35<br>53.89   | 산책로 | 어린이놀이터<br>산책로 30 | 휴게소 2<br>산책로 27  |    |
| 당초<br>변경 |             | -  | 29 | 0.8<br>1.5 | 19.9<br>39.0   | 15.93<br>58.50   | 산책로 | 진입광장 1<br>산책로 30 | 산책로 26<br>산책로 27 |    |
| 당초<br>변경 |             | -  | 30 | 3.0<br>1.5 | 40.3<br>36.8   | 120.76<br>55.25  | 산책로 | 진입광장 1<br>산책로 25 | 산책로 26<br>69-176 |    |
| 당초<br>변경 |             | -  | 31 | 1.5<br>1.5 | 25.9<br>34.4   | 38.91<br>51.65   | 산책로 | 산책로 33<br>진입광장 1 | 산책로 25<br>산책로 25 |    |
| 당초<br>변경 |             | -  | 32 | 1.5<br>1.5 | 3.5<br>38.3    | 5.25<br>57.51    | 산책로 | 어린이놀이터<br>산책로 36 | 산책로 33<br>산책로 30 |    |
| 당초<br>변경 |             | -  | 33 | 1.5<br>1.5 | 6.5<br>6.6     | 9.75<br>9.96     | 산책로 | 진입광장 1<br>산책로 31 | 산책로 31<br>휴게소 1  |    |
| 당초<br>변경 |             | -  | 34 | 1.5<br>1.5 | 43.0<br>15.5   | 64.46<br>23.32   | 산책로 | 진입광장 1<br>진입광장 1 | 휴게소 2<br>진입광장 1  |    |
| 신설       |             | -  | 35 | 1.5        | 11.7           | 17.69            | 산책로 | 진입광장 1           | 진입광장 1           |    |
| 신설       |             | -  | 36 | 2.5        | 39.7           | 99.32            | 산책로 | 69-176           | 진입광장 1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5호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

## 1. 보정계수의 정의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2.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 3.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단위에너지 생산량은 한국 에너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한다.

##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 신·재생에너지원 |        | 단위 에너지생산량 |                         | 원별 보정계수 |
|----------|--------|-----------|-------------------------|---------|
| 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 · yr             | 1.56    |
|          | 추적식    | 1,765     |                         | 1.68    |
|          | BIPV   | 923       |                         | 5.48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m <sup>2</sup> · yr | 1.42    |
|          | 단일진공관형 | 745       |                         | 1.14    |
|          | 이중진공관형 | 745       |                         | 1.14    |
|          | 공기식무창형 | 487       |                         | 1.37    |
|          | 공기식유창형 | 557       |                         | 2.57    |

| 신·재생에너지원 |       | 단위 에너지생산량 |                         | 원별 보정계수 |
|----------|-------|-----------|-------------------------|---------|
| 지열에너지    | 수직밀폐형 | 864       | kWh/kW · yr             | 1.09    |
|          | 개방형   | 864       |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m <sup>2</sup> · yr | 7.74    |
|          | 광덕트   | 73        |                         | 7.74    |
|          | 실내루버형 | 184       |                         | 2.77    |
| 연료전지     | PEMFC | 7,415     | kWh/kW · yr             | 2.84    |
|          | PAFC  | 8,785     |                         | 0.93    |
| 수열에너지    |       | 864       | kWh/kW · yr             | 1.12    |
| 목재펠릿     |       | 322       | kWh/kg · yr             | 0.52    |

## 〈비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외의 설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 1)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 2) 보정계수 :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외부는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단,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나) 사업계획서, 외부 부지 소유주와 계약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대상지 내 발전사업용 부지조성 및 발전사업자 유치

- 1) 대상 에너지원 : 모든 신·재생에너지
- 2) 보정계수 :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건축물인 경우는 용도를 발전시설)로 결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을 적용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한다.

(나) 사업주체는 사업승인 전까지 발전사업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 경우 의무화된 시설용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대체에너지 범위 :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 (3)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상수열

| 에너지원            | 형식                    | 단위 에너지생산량<br>(kWh/kW·yr) | 보정계수 |
|-----------------|-----------------------|--------------------------|------|
| 자가<br>열병합<br>발전 | 50kW 미만               | 3,523                    | 6.08 |
|                 | 50kW 이상,<br>200kW 미만  | 5,209                    | 1.67 |
|                 | 200kW 이상,<br>500kW 미만 | 5,436                    | 0.93 |
|                 | 500kW 이상              | 7,216                    | 0.56 |
| 에너지저장장치         | 1,000kWh 미만           | 277                      | 2.05 |
|                 | 1,000kWh 이상           |                          | 1.87 |
| 상수열             | -                     | 1,723                    | 0.38 |

※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 (1) 공동주택
  -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 2.0%
  -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 1.0%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 1.5%
  -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 1.5%
- (3)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의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6호

##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609호(2006.4.21.)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68호(2013.8.2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5-26호(2015.2.1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8호(2015.7.16.)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2015-167호(2015.7.3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변경) 고시된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시장정비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변경없음)

| 구역명칭       | 위 치              | 면적(㎡)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 5,109.8 | -  | 5,109.8 | -   |

다.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 성명 : 시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대표자 임락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대표자 배일규)

2) 주소

● 시에스네트웍스(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71 (수유동, 태양빌딩 4층)

● 아시아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구 분             | 면 적(㎡)  |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계              | 5,109.8 | -  | 5,109.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5,109.8 | -  | 5,109.8 |    |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점            | 종점           | 사용<br>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br>도로 | 47        | 수유동<br>179-22 | 수유동<br>179-9 | 일반<br>도로    |           | 2013.08.22 |    |
| 변경 | 소로  | 3  | (2) | 4         | 국지<br>도로 | 47        | 수유동<br>179-22 | 수유동<br>179-9 | 보행자<br>우선도로 |           |            |    |

☐ 도로 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전<br>도로명 | 변경후<br>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 | 소로3-(2)    | 소로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변경 : 6m → 4m</li> <li>사용형태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활한 차량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 폭원 6m→4m 변경 및 사용형태 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 변경</li> </ul>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위 치                | 면적(㎡)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획지 |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 4,813.6 | 증)116.7 | 4,930.3 | -   |

☐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획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획지면적 4,813.6㎡ → 4,930.3㎡ 변경 (116.7㎡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li> </ul> |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 기정(2015.07.31.)                                                                    | 변 경                            | 변경후                                                                                                                                                  |    |
| 용 도      |                                | 공동주택, 판매시설                                                                         | －                              | 공동주택, 판매시설                                                                                                                                           |    |
| 건물<br>면적 | 건축면적                           | 2,890.14㎡                                                                          | 감) 5.30㎡                       | 2,884.84㎡                                                                                                                                            |    |
|          | 연면적                            | 25,506.92㎡                                                                         | 증) 4,490.25㎡                   | 29,997.17㎡                                                                                                                                           |    |
|          | 판매시설<br>(매장면적)                 | 6,337.28㎡<br>(4,253.66㎡)                                                           | 증) 593.29㎡<br>(감) 101.07㎡)     | 6,930.57㎡<br>(4,152.59㎡)                                                                                                                             |    |
| 건폐율      |                                | 60.04%이하                                                                           | 감) 1.53%                       | 58.51%                                                                                                                                               |    |
| 용적률      |                                | 334.39%이하                                                                          | 증) 33.25%                      | 367.64%                                                                                                                                              |    |
| 층수(높이)   |                                | 11층이하(34.35m)<br>※ 도로사선제한을 1.8D로 완화하되<br>북측 주거지 일조에 대한 부영향이<br>없는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할 것   | 증) 4층<br>(11.20m)              | 15층이하(45.55m)                                                                                                                                        |    |
| 배 치      |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br>경계로부터 6m | －                                                                                  |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br>경계로부터 6m |                                                                                                                                                      |    |
|          | 벽면한계선 : 높이2층, 폭6m              | 벽면한계선 폐지                                                                           | 폐지                             |                                                                                                                                                      |    |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계획<br>－ 높이2층, 폭 6m<br>※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공보행에<br>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 금지            | 공공보행통로<br>위치 등 변경<br>(폭6m→4m)  | ●공공보행통로 계획<br>－ 폭 4m<br>※ 상권활성화 및 옛골목길 보존<br>등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기정<br>위치에 설치되는 차량출입구의<br>우측으로 보행공간 1개소 설치<br>※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공보행에<br>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br>금지 |    |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br>(북동측, 6m), 차도형(남서측, 보도<br>5m,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br>※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 북동측, 남서측<br>보도형 전면공지<br>폐지     | ●차도형(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br>※ 폐지되는 보도형 전면공지에 불<br>법 주정차를 고려한 녹지(화단)<br>조성외에 보행통로에 지장을 주<br>는 시설물 (담장, 계단, 간판 등)<br>설치 금지<br>단,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    |
| 공개공지     |                                |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br>(249.33㎡)                                                  | 1개소 → 2개소<br>증)95.81㎡          | ●남동측 도로변(8m), 남서측<br>도로변(4m) 공개공지 2개소<br>지정 (345.14㎡)<br>※ 공개공지 공간에 지장물 설치금지                                                                         |    |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건물면적,<br>건폐율,<br>용적률,<br>층수(높이) | ●건물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건축규모 변경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의 도로폭원 변경으로 획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건축규모 변경                                                                                                           |    |
|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높이2층, 폭6m) → 벽면한계선 폐지                                                                         | ●차량진출입구 변경에 따른 폐지                                                                                                                                                                       |    |
| 공공보행<br>통로                      | ●공공보행통로 위치변경<br>●높이2층, 폭6m → 폭4m 변경                                                                  | ●차량진출입구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상권활성화 및 옛길<br>목길 보존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 위치에 설<br>치되는 차량진출입구의 우측으로 보행공간 1개소 설치<br>●판매시설 주부출입구를 공공보행통로 지정하여 높이1<br>층, 폭원 4m로 조성토록 하며, 공공보행에 장애시설(출<br>입문·물건적치 등) 금지토록 함 |    |
| 전면공지                            | 보도형(북동측, 6m), 차도형(남서<br>측, 보도5m, 차도1m)<br>전면공지 지정 → 북동측, 남서측<br>보도형 전면공지 폐지 및<br>차도형(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 | ●불법주정차를 고려한 녹지(화단) 조성을 위하여 북동측,<br>남서측 보도형 전면공지 폐지하며, 녹지(화단) 조성외에<br>보행통로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토록 함<br>●차도형(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 (변경없음)                                                          |    |
| 공개공지                            |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1개소<br>지정 → 남동측 도로변(8m), 남서<br>측 도로변(4m)<br>공개공지 2개소 지정                             | ●주변지역과 보행자 위주의 동선 연계 확보를 위한 남서<br>측 도로변(4m) 공개공지 1개소 추가로 지정<br>하고, 공개공지 공간에 지장물 설치 금지토록 함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 구분 | 시설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커뮤니티시설 | ●지하1층~지상1층 264.43㎡ 청년일자리자원센터 설치                             |    |
| 변경 | 커뮤니티시설 | ●지상1층~2층 579.84㎡ 청년일자리자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br>※ 추후 협의에 따라 위치조정 가능 |    |

☐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수유실·휴게시설 설치(지상1층)
- 상인동선 및 교통체계 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1층 조업주차 3대 및 하역공간 확보
-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지상1층 140.35㎡, 지상2층 113.24㎡ 규모 조성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차량출입구 | ※ 결정도 참고 | 차량출입구 1개소         |
| 변경 | 차량출입구 | ※ 결정도 참고 | 차량출입구 1개소<br>위치변경 |



2) 입점상인 보호대책(변경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2.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2015.05.18.)에 의거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상향 등 건축계획 변경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함

3. 관계서류 열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46) 및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된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조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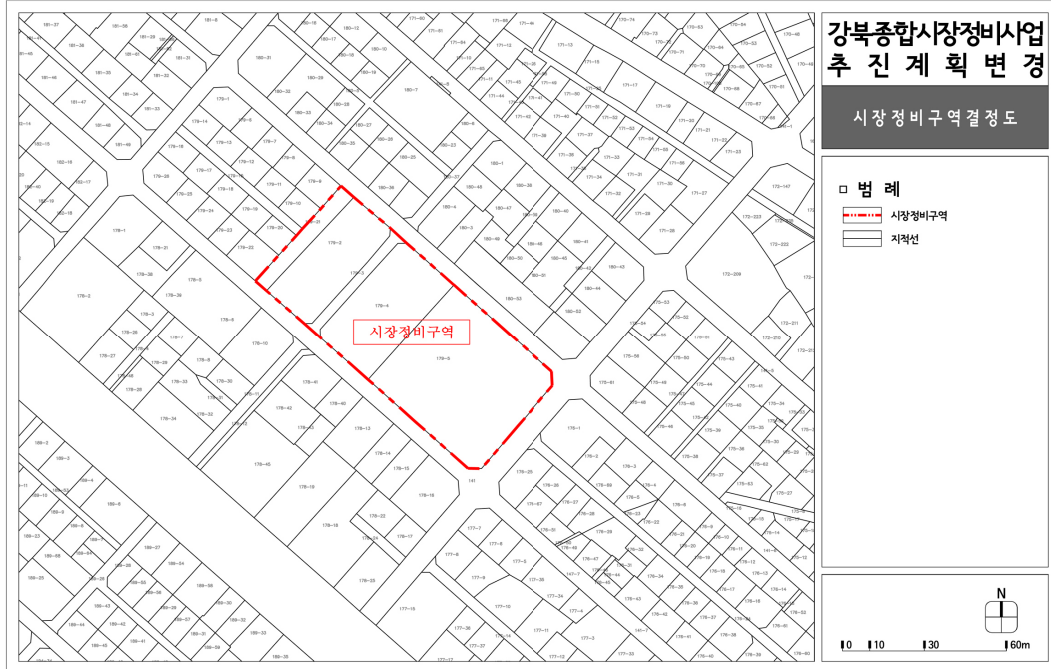
☐ 조건사항

- 협동조합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인·허가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할 것
- 커뮤니티시설 활용은 주민 및 상인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
-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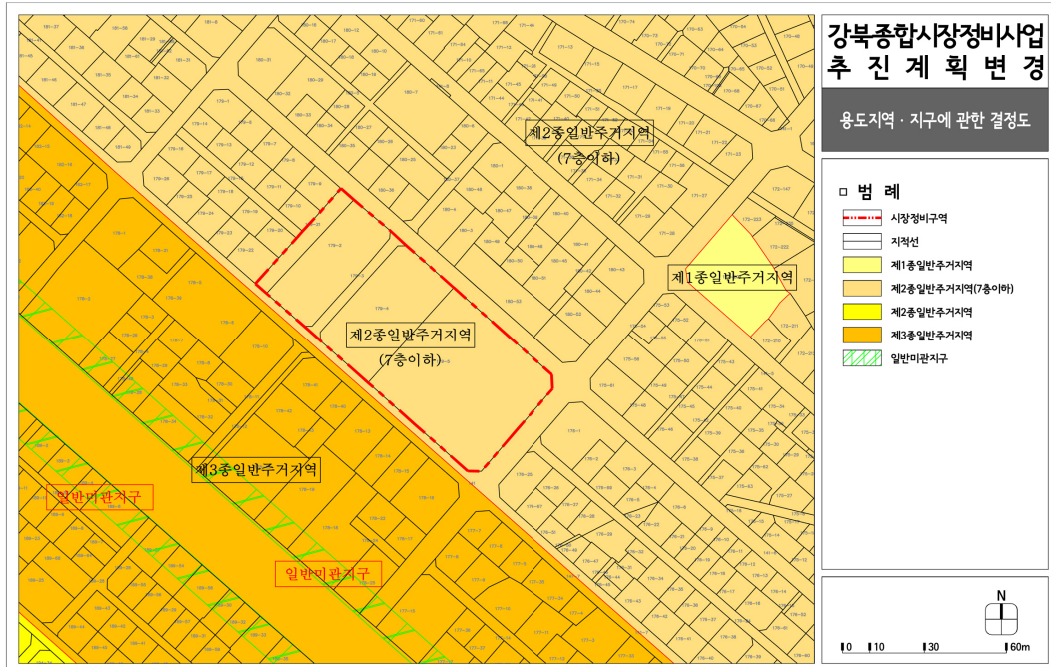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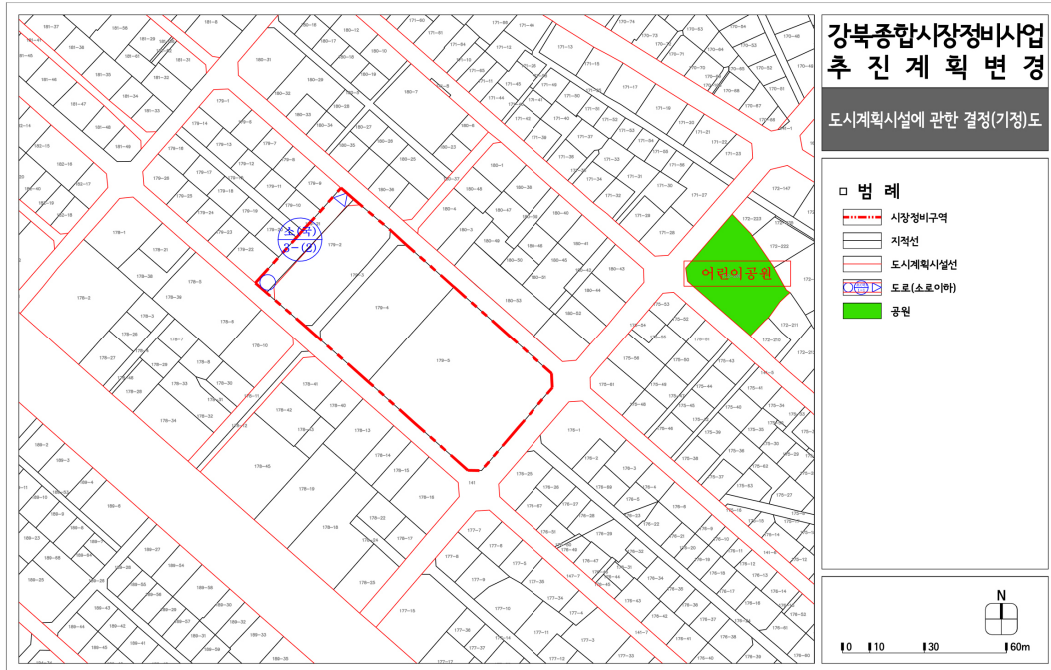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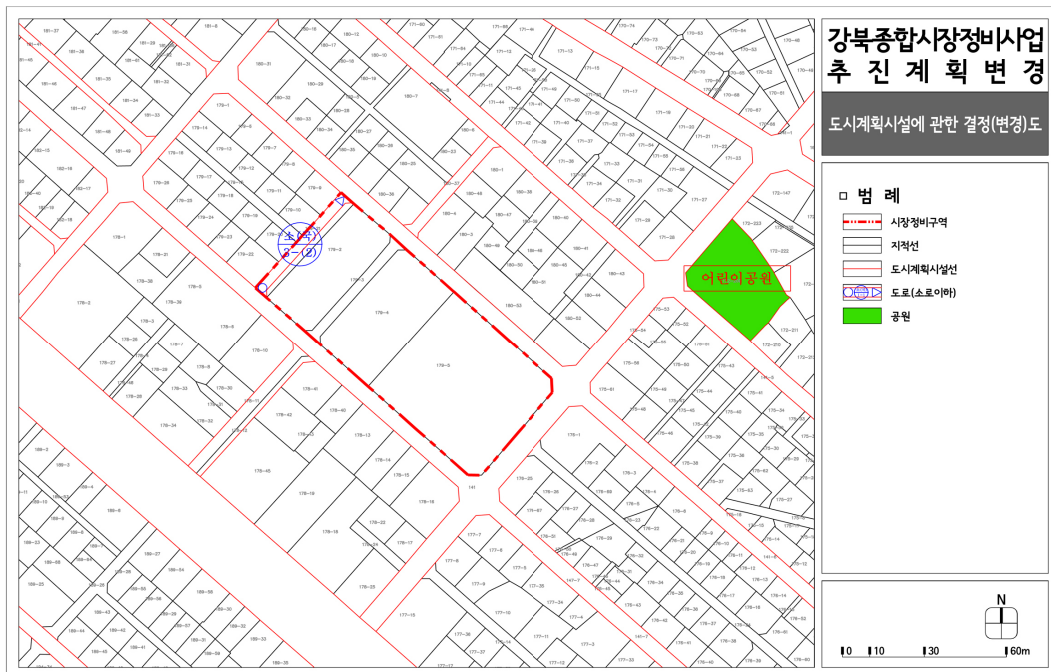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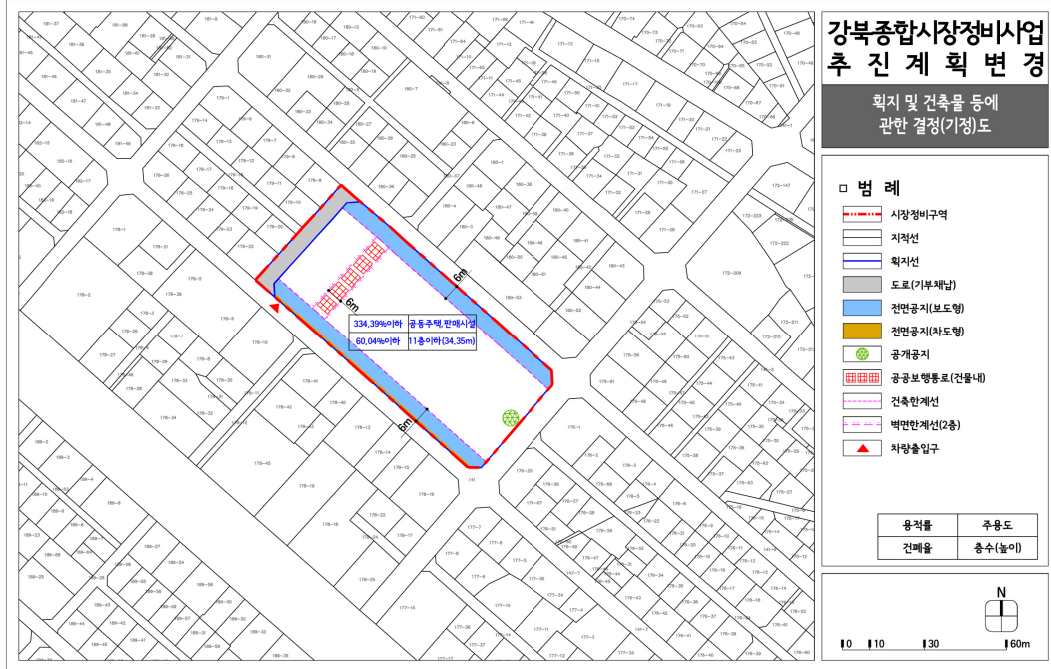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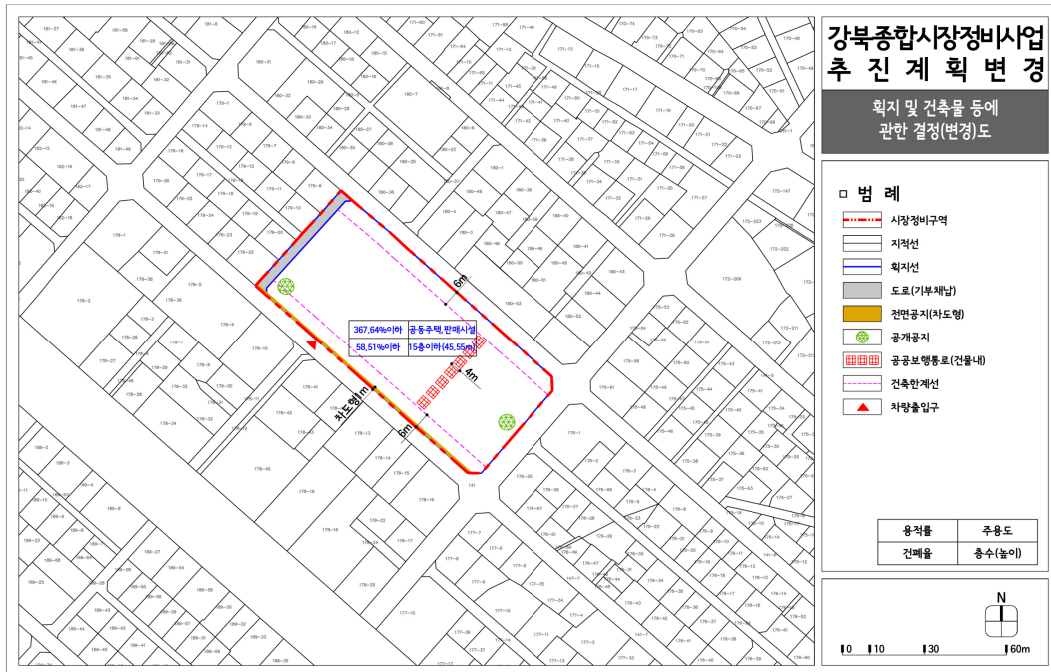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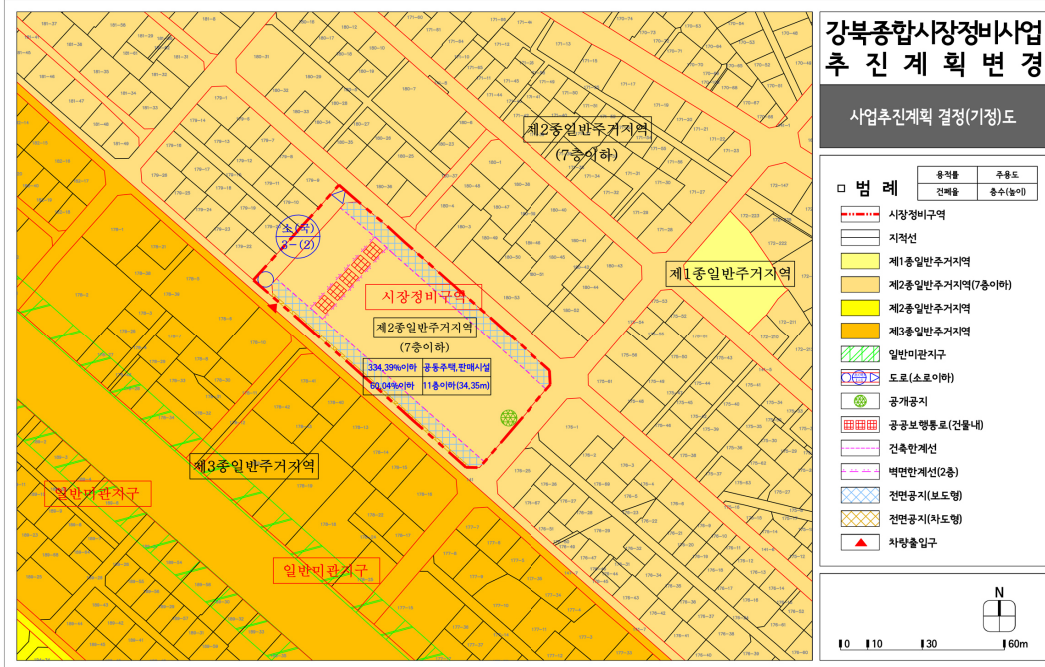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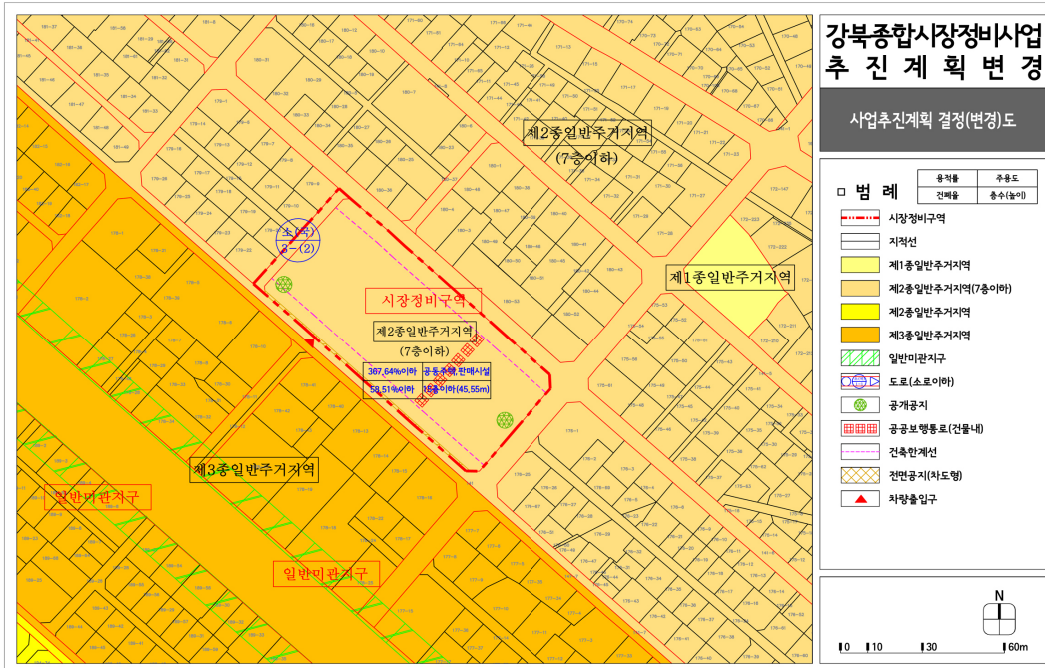




〈사업추진계획 결정(기정)도〉



〈사업추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7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46호(2014.04.17.)로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08.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 결정 취지**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교동 167-13 일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공공공지 폐지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 270,547<br>(3,273.6) | 증) 0.6<br>(증) 0.4) | 270,547.6<br>(3,274.0) | '87.02.03<br>(서울특별시공고제53호) | -  |

주) (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67-13번지 외 32필지)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li> <li>- 면적 : 270,547㎡ ⇒ 270,547.6㎡</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분할 및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를 반영</li> </ul>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분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근린상업지역 | 81,455<br>(3,273.6) | 증) 0.6<br>(증) 0.4) | 81,455.6<br>(3,274.0) | 100.0  | -  |

주) 1. 근린상업지역 면적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2. (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67-13번지 외 32필지) 면적이며, 토지 분할 및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를 반영함

#### 나) 용도지구

(1)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3)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br>진흥지구 | 마포구 서교동<br>395번지 일대 | 746,994<br>(3,273.6)   | 서고2010-21호<br>(`10.01.28) | 디자인산업<br>출판산업 |
| 변경 |        |              |                     | 746,994.6<br>(3,274.0) |                           |               |

주) (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67-13번지 외 32필지) 면적이며, 토지 분할 및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를 반영함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점            | 종점            | 사용<br>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소로 | 3  | 37 | 4     | 국지<br>도로 | 15        | 동교동<br>167-64 | 동교동<br>167-63 | 일반도로     | 서고제2014-146호<br>(2014.04.17.) | -                 |
| 변경 | 소로 | 3  | 37 | 4     | 국지<br>도로 | 15        | 동교동<br>167-64 | 동교동<br>167-63 | 일반도로     | 서고제2014-146호<br>(2014.04.17.) | 입체적(공간적<br>범위) 결정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소로<br>3-37호선 | 소로<br>3-37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소로 3-37호선</li> <li>- 면적 : 64.7㎡ ⇒ 64.9㎡</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분할 및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를 반영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li> </ul> |

##### (2)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규모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길이  | 폭  | 높이(해발고도 기준) | 면적    |        |    |
| 신설 | -      | 소로 3-37호선 | 동교동 167-64 | 15m | 4m | E.L +8m 이상  | 64.9㎡ | -      | -  |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소로 3-37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소로 3-37호선, L=15m)의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도로) 하부 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li> </ul> |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      | 공공공지 | 동교동 167-25 | 469.7  | 감) 469.7 | -   | 서고제2014-146호<br>(2014.04.17.)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A=469.7㎡) | 사업계획의 변경 및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획지계획 수립 |

다) 기타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 생략

나) 공동개발계획(변경)



| 구분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NC-16 | 3,605.4 | 동교동 | 167-2  | 21.4    | 2,739.2   | 획지계획 | 국유지 매각<br>불가에 따른<br>획지변경 |
|    |       |         | 동교동 | 167-4  | 28.6    |           |      |                          |
|    |       |         | 동교동 | 167-5  | 36.9    |           |      |                          |
|    |       |         | 동교동 | 167-6  | 36.5    |           |      |                          |
|    |       |         | 동교동 | 167-7  | 18.2    |           |      |                          |
|    |       |         | 동교동 | 167-9  | 101.8   |           |      |                          |
|    |       |         | 동교동 | 167-10 | 270.4   |           |      |                          |
|    |       |         | 동교동 | 167-11 | 102.4   |           |      |                          |
|    |       |         | 동교동 | 167-12 | 215.9   |           |      |                          |
|    |       |         | 동교동 | 167-13 | 308.1   |           |      |                          |
|    |       |         | 동교동 | 167-14 | 141.2   |           |      |                          |
|    |       |         | 동교동 | 167-15 | 80.7    |           |      |                          |
|    |       |         | 동교동 | 167-16 | 281.1   |           |      |                          |
|    |       |         | 동교동 | 167-18 | 76.5    |           |      |                          |
|    |       |         | 동교동 | 167-19 | 105.1   |           |      |                          |
|    |       |         | 동교동 | 167-20 | 98.5    |           |      |                          |
|    |       |         | 동교동 | 167-21 | 173.9   |           |      |                          |
|    |       |         | 동교동 | 167-22 | 211.2   |           |      |                          |
|    |       |         | 동교동 | 167-23 | 99.4    |           |      |                          |
|    |       |         | 동교동 | 167-24 | 15.4    |           |      |                          |
|    |       |         | 동교동 | 167-30 | 57.5    |           |      |                          |
|    |       |         | 동교동 | 167-31 | 93.9    |           |      |                          |
|    |       |         | 동교동 | 167-33 | 135.9   |           |      |                          |
|    |       |         | 동교동 | 167-40 | 15.4    |           |      |                          |
|    |       |         | 동교동 | 167-55 | 0.9     |           |      |                          |
|    |       |         | 동교동 | 167-56 | 0.1     |           |      |                          |
|    |       |         | 동교동 | 167-57 | 12.3    |           |      |                          |
|    |       |         | 동교동 | 167-1  | 5.6     | 5.6       | -    | 국유지                      |
|    |       |         | 동교동 | 167-39 | 0.2     | 0.2       | -    |                          |
|    |       |         | 동교동 | 167-29 | 326.0   | 326.0     | 획지계획 |                          |
|    |       |         | 동교동 | 167-24 | 74.0    | 469.7     |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         | 동교동 | 167-25 | 293.9   |           |      |                          |

| 구분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위치  |        | 대지면적 (㎡) | 공동개발면적 (㎡)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NC-16 | 3,605.4  | 동교동 | 167-26 | 74.4     | 469.7      |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          | 동교동 | 167-27 | 27.4     |            |      |           |
|    |       |          | 동교동 | 167-23 | 7.0      | 64.7       | 도로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          | 동교동 | 167-24 | 57.7     |            |      |           |
| 변경 | NC-16 | 3,606.0  | 동교동 | 167-2  | 21.4     | 2,739.7    | 획지계획 | -         |
|    |       |          | 동교동 | 167-4  | 28.6     |            |      |           |
|    |       |          | 동교동 | 167-5  | 36.9     |            |      |           |
|    |       |          | 동교동 | 167-6  | 36.5     |            |      |           |
|    |       |          | 동교동 | 167-7  | 18.2     |            |      |           |
|    |       |          | 동교동 | 167-9  | 101.8    |            |      |           |
|    |       |          | 동교동 | 167-10 | 270.4    |            |      |           |
|    |       |          | 동교동 | 167-11 | 102.4    |            |      |           |
|    |       |          | 동교동 | 167-12 | 215.9    |            |      |           |
|    |       |          | 동교동 | 167-13 | 308.1    |            |      |           |
|    |       |          | 동교동 | 167-14 | 141.2    |            |      |           |
|    |       |          | 동교동 | 167-15 | 80.7     |            |      |           |
|    |       |          | 동교동 | 167-16 | 281.5    |            |      |           |
|    |       |          | 동교동 | 167-18 | 76.5     |            |      |           |
|    |       |          | 동교동 | 167-19 | 105.1    |            |      |           |
|    |       |          | 동교동 | 167-20 | 98.5     |            |      |           |
|    |       |          | 동교동 | 167-21 | 173.9    |            |      |           |
|    |       |          | 동교동 | 167-22 | 211.2    |            |      |           |
|    |       |          | 동교동 | 167-23 | 99.4     |            |      |           |
|    |       |          | 동교동 | 167-65 | 15.5     |            |      |           |
|    |       |          | 동교동 | 167-30 | 57.5     |            |      |           |
|    |       |          | 동교동 | 167-31 | 93.9     |            |      |           |
|    |       |          | 동교동 | 167-33 | 135.9    |            |      |           |
|    |       |          | 동교동 | 167-40 | 15.4     |            |      |           |
|    |       |          | 동교동 | 167-55 | 0.9      |            |      |           |
|    |       |          | 동교동 | 167-56 | 0.1      |            |      |           |
|    |       |          | 동교동 | 167-57 | 12.3     |            |      |           |

| 구분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계획내용 | 비고                                                        |
|----|-------|---------|-----|--------|---------|-----------|------|-----------------------------------------------------------|
| 변경 | NC-16 | 3,606.0 | 동교동 | 167-1  | 5.8     | 5.8       | —    | 국유지                                                       |
|    |       |         | 동교동 | 167-39 | 0.2     | 0.2       | —    |                                                           |
|    |       |         | 동교동 | 167-29 | 326.0   | 326.0     | 획지계획 |                                                           |
|    |       |         | 동교동 | 167-24 | 73.7    | 469.4     | 획지계획 | 사업계획의 변경 및<br>가로활성화를 유도하기<br>위한 획지계획 수립<br>(기정 도시계획시설 폐지) |
|    |       |         | 동교동 | 167-25 | 293.9   |           |      |                                                           |
|    |       |         | 동교동 | 167-26 | 74.4    |           |      |                                                           |
|    |       |         | 동교동 | 167-27 | 27.4    |           |      |                                                           |
|    |       |         | 동교동 | 167-63 | 7.0     | 64.9      | 도로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         | 동교동 | 167-64 | 57.9    |           |      |                                                           |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 용도계획(변경)

(1) 불허용도(변경없음) : 생략

(2) 권장용도(변경없음) : 생략

(3) 지정용도(변경)

| 구분 |                  | 계획내용                             | 비고 |
|----|------------------|----------------------------------|----|
| 폐지 | 동교동 167-13외 28필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동교동 167-13 외 28필지 | 지정용도 폐지 | • 숙박시설의 과포화 현상 등 여건의 변화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이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지정용도 폐지 |

## 나) 건축물 밀도계획(변경없음) : 생략

(1)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다) 건축물 높이계획(변경없음) : 생략

##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변경)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건축선 | • 간선가로변(40m 이상 도로) | • 건축한계선 5m      |
|    |     | • 내부가로(4m 이상 도로)   |                 |
| 변경 | 건축선 | • 간선가로변(40m 이상 도로) | • 건축한계선 2m ~ 4m |
|    |     | • 내부가로(4m 이상 도로)   |                 |
|    |     | • 동교동 167-29 인접대지  |                 |

■ 건축선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건축선<br>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변(40m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5m</li> <li>• 내부가로(4m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2 ~ 4m</li> <li>• 동교동 167-29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2.5m</li> </ul> | • 공공공지 폐지 및 획지 신설에 따른 건축한계선 반영 |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기정 | <b>전면<br/>공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조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li> <li>- 기조성된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li> <li>-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li> <li>-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li> </ul> </li> </ul> | • 지침도 위치 표기 |
|    | <b>공개<br/>공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li> <li>•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li> <li>•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li> <li>•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li>•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li> </ul>                                                                                                                                                                                                                                                                             | • 지침도 위치 표기 |
|    | <b>쌈지형<br/>공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li> <li>•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5㎡ 이상</li> <li>• 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li> <li>•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ul>                                                                                                                                                                                                                                                                                                                                            |             |

| 구분 |                | 계 획 내 용                                                                                                                                                                                                                                                                                                                                                                                                                                                                                                                                                                                                             | 비고                                                                                                 |
|----|----------------|---------------------------------------------------------------------------------------------------------------------------------------------------------------------------------------------------------------------------------------------------------------------------------------------------------------------------------------------------------------------------------------------------------------------------------------------------------------------------------------------------------------------------------------------------------------------------------------------------------------------|----------------------------------------------------------------------------------------------------|
| 기정 | 침상형<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li> <li>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li> </ul>                                                                                                                                                                                                                                                                                                                                                                                                                                                                |                                                                                                    |
|    | 공공<br>보행<br>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의 통행을 위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li> <li>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중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및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해야 함</li> </ul>                                                                                                                                                                                                                                                                                                                                                                                                                                      |                                                                                                    |
| 변경 | 전면<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조성 지침(도로와 접하지 않은 전면공지는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li> <li>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li> <li>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를 포장</li> <li>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침도 위치 표기</li> <li>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한 일부구간의 전면공지 유형 변경</li> </ul> |
|    | 공개<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li> <li>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li> <li>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li> <li>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li> <li>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li>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침도 위치 표기 (2개소 위치 지정)</li> </ul>                            |
|    | 쌈지형<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li> <li>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5㎡ 이상</li> <li>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li> <li>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li> <li>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ul>                                                                                                                                                                                                                                                                                                                                                                                                   |                                                                                                    |
|    | 침상형<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li> <li>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li> </ul>                                                                                                                                                                                                                                                                                                                                                                                                                                                                |                                                                                                    |
|    | 공공<br>보행<br>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의 통행을 위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li> <li>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중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및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해야 함</li> </ul>                                                                                                                                                                                                                                                                                                                                                                                                                                      |                                                                                                    |

주) 1. 위 사항을 포함하여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를 우선 적용

■ 대지 내 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공지 유형 변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화로(이면부)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전면공지 유형을 차도형에서 보도형으로 변경</li> </ul>                 |
| 공개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공지(2개소) 위치 지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의선 홍대역사 및 윗잔다리공원과의 연계와 획지1 가각부의 보행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개공지(2개소)의 위치를 반영</li> </ul>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1)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 계 획 내 용                                                                                                      | 비고                      |
|----|-----------|--------------------------------------------------------------------------------------------------------------|-------------------------|
| 기정 | 차량진입 불허구간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 지침도 위치 표기             |
|    | 주차출입구     | •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 • 지침도 위치 표기             |
| 변경 | 차량진입 불허구간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 지침도 위치 표기<br>(결정도 참조) |
|    | 주차출입구     | •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 • 지침도 위치 표기             |

■ 차량동선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차량진입 불허구간 | • 동교동 167-25일대 서측 양화로변 및 남측 소로 3-37호선에 차량진입불허구간 지정 | • 획지 내 차량진입불허구간 설정을 통한 대상지의 교통수요 관리 |

(2) 주차장 완화구역에 관한 계획(신설)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신설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완화 구역 | 동교동 167-25 일대 | 469.4㎡ |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 동교동 167-25번지 지상 2층 전체공간(전용면적 : 약 154㎡)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권고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에 공공지원시설로 5년간 무상임대 제공(단, 대상지 및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약시 변경가능)

■ 주차장 완화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차량진입 불허구간 | • 차량진입불허구간 지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 신설 | • 대상지 내 교통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의 유도를 위한 주차장 설치완화구역 설정 |

4) 인센티브 운용계획(변경)

가)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없음) : 생략

나) 상한용적률(변경)

| 위치                              | 용도지역           | 세부 변경 내용 |       |         |                                                                                                                                                                           |
|---------------------------------|----------------|----------|-------|---------|---------------------------------------------------------------------------------------------------------------------------------------------------------------------------|
|                                 |                | 구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동교동 167-13 일대<br>(가구번호 : NC-16) | 근린<br>상업<br>지역 | 기정       | 300%  | 50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적률<math>\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text{관광숙박 시설 인센티브 용적률}</math></li> <li>※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준용</li> </ul> |
|                                 |                | 변경       | 300%  | 50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적률<math>\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math></li> <li>※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li> </ul>                     |

- 주) 1.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여 건폐율 완화를 받은 경우, 동일한 이유로 중복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없음
2.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된 용적률을 말하며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기준에 따름
3.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상한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동교동 167-13 일대<br>(가구번호 : NC-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폐지에 따른 상한용적률 운영체계 변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 기준 준용</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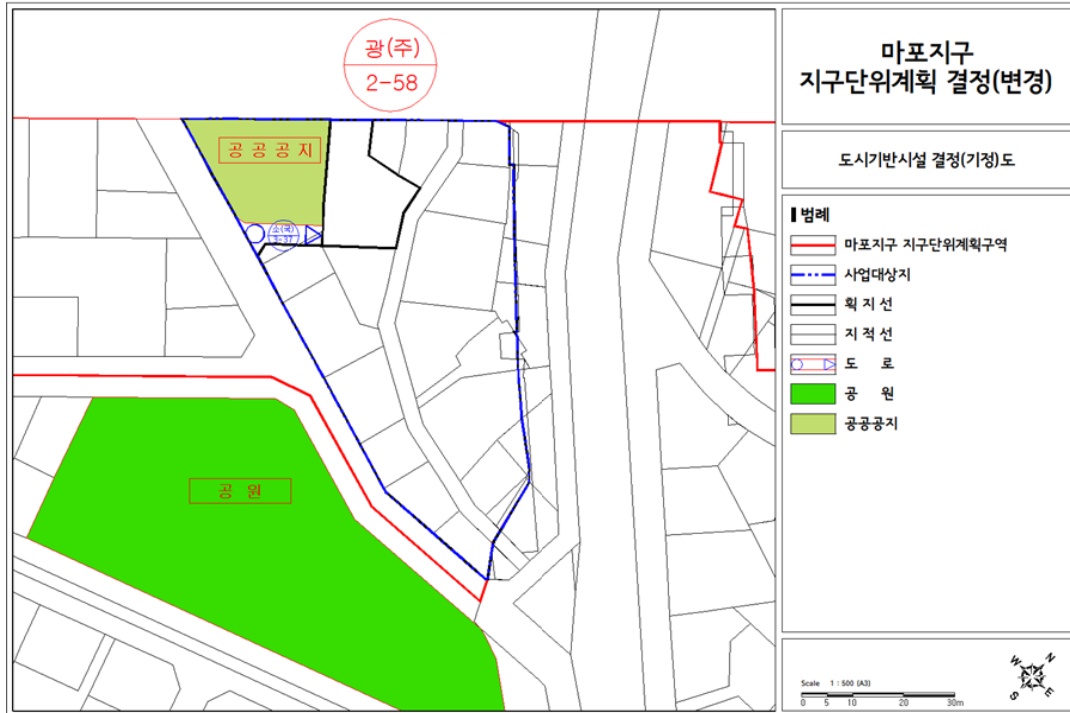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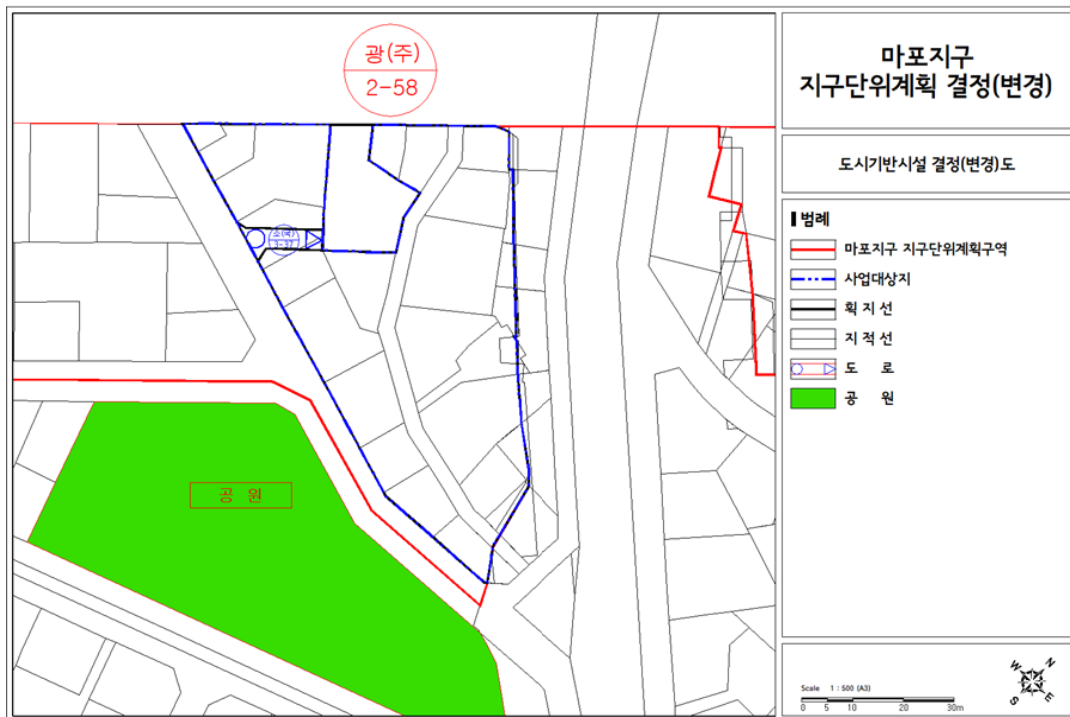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2)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153-93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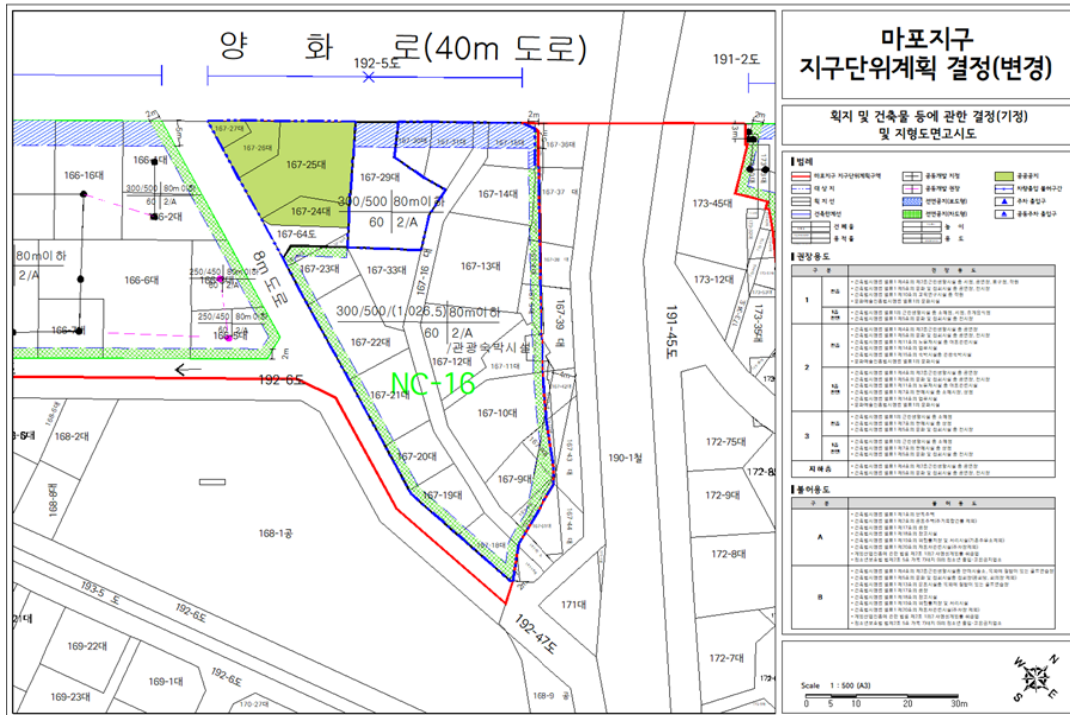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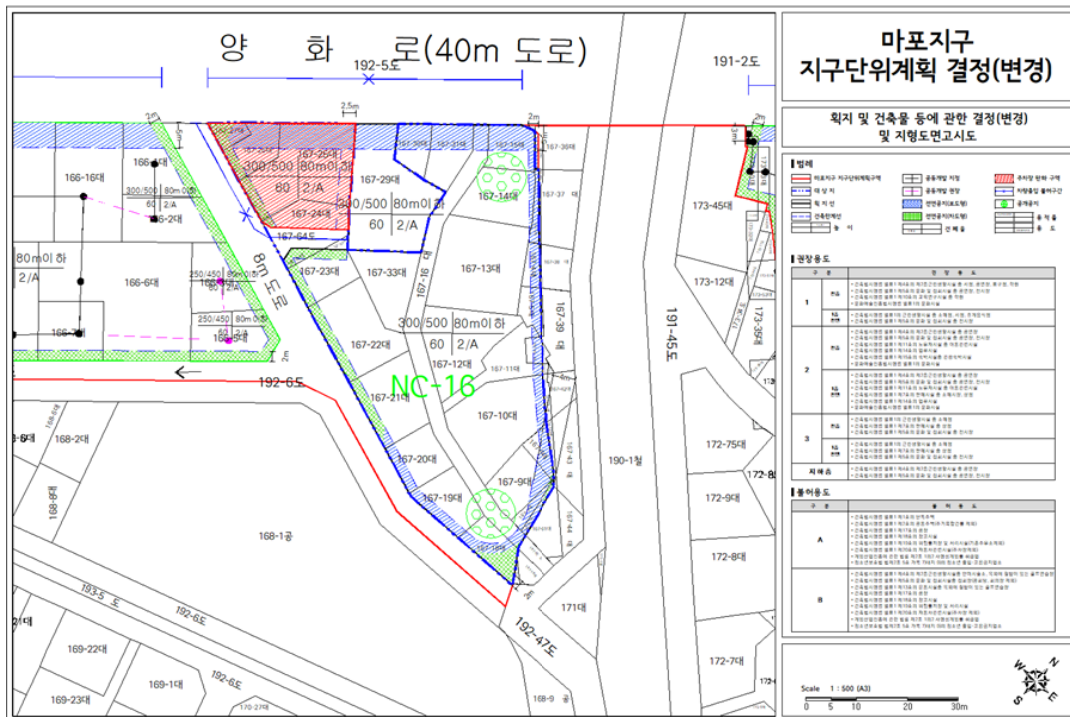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8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 □ 행정용어 순화어

| 연번 | 바뀌야 할 말<br>(순화대상어)        | 뜻 또는 활용 예                                                                            | 권하는 말<br>(행정순화어) |
|----|---------------------------|--------------------------------------------------------------------------------------|------------------|
| 1  | 네이밍<br>(Naming)           | 뜻: 이름을 짓다(새로운 상품의 브랜드명, 정책명, 건물 등)<br>예: 네이밍 공모전, 브랜드 네이밍                            | 이름/<br>이름짓기      |
| 2  | 솔라스테이션<br>(Solar Station) | 뜻: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br>예: 솔라스테이션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다 | 햇빛충전소            |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02-2133-64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9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5호(2017.4.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1호(2018.3.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2호(2018.6.21.)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마포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원

- 면 적 : 6,735.9m<sup>2</sup>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구분 | 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번호           |
|----|-----------------------------|-------------|-------------------------------|----------------|
| 기정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110114-0194495 |
|    | 주식회사 효성                     | 김규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br>(공덕동)   | 110111-0030497 |
| 변경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110114-0194495 |
|    | 효성중공업(주)                    | 문섭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br>(방배동 방배빌딩) | 110111-6770154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구분 | 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번호           |
|----|-----------------------------|-------------|-------------------------------|----------------|
| 기정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110114-0194495 |
|    | 주식회사 효성                     | 김규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br>(공덕동)   | 110111-0030497 |
| 변경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110114-0194495 |
|    | 효성중공업(주)                    | 문섭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br>(방배동 방배빌딩) | 110111-6770154 |

3. 사업기간 및 채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6호(2017.4.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3호(2018.6.21.)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 구분 | 명 칭                         | 대 표 자       | 주 소                           |
|----|-----------------------------|-------------|-------------------------------|
| 기정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    | 주식회사 효성                     | 김규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br>(공덕동)   |
| 변경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br>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br>(서교동)     |
|    | 효성중공업(주)                    | 문섭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br>(방배동 방배빌딩) |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개요(변경없음)
6. 기타사항(변경없음)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63호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김홍두   | 전라남도 광양시 세동길 **, ***호 (중동)                     | 일시: 2018-07-28 20:13<br>장소: 별말로<br>내용: 제한 폭 0.48미터 초과   | 처분일: 2018. 8. 27.<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18. 10. 31. |
| 구상희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 ***동 ***호 (모라동, 주공아파트) | 일시: 2018-07-29 16:49<br>장소: 마곡중앙로<br>내용: 제한 폭 0.28미터 초과 | 처분일: 2018. 8. 27.<br>과태료: 30만 원<br>납기일: 2018. 10. 31. |
| 한광신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 (선부동)                      | 일시: 2018-08-03 11:05<br>장소: 양천로<br>내용: 제한 축하중 1.75톤 초과  | 처분일: 2018. 8. 27.<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18. 10. 31. |

-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가회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10번길<br>*****, ***호 (웅현동, 대림빌라)  | 일시: 2018-05-25 16:32<br>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br>내용: 제한 축하중 1.86톤 초과 | 처분일: 2018. 6. 27.<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18. 8. 31. |
| 신동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8, ***<br>동 ****호 (부개동, 주공아파트) | 일시: 2018-05-31 13:34<br>장소: 마곡사거리<br>내용: 제한 높이 0.24미터 초과         | 처분일: 2018. 6. 27.<br>과태료: 30만 원<br>납기일: 2018. 8. 31.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2018.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76호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인차인변경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18.06월분 임차인변경)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09.27. ~ 2018.10.11.(15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 02-2290-6200)으로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 연번 | 고지번호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주차장   | 입차일자       | 입차일시  | 출차일자       | 출차일시  | 부과금액  | 가산금           | 주차요금  | 소유자              | 주소                | 우편번호  | 반송사유  |
|----|----------|---------------|---------|-------|------------|-------|------------|-------|-------|---------------|-------|------------------|-------------------|-------|-------|
|    | 8건       |               |         |       |            |       |            |       |       | 총합계 : 33,000원 |       |                  |                   |       |       |
| 1  | 20205841 | 1899053121377 | 25나8730 | 서린노외  | 2018-04-25 | 16:00 | 2018-04-25 | 18:00 | 1,900 | 0             | 1,900 | 올리브내과의원<br>(문을선) | 서울 마포구 동교로        | 03980 | 폐문부재  |
| 2  | 20205867 | 1899053121378 | 25나8730 | 서린노외  | 2018-04-30 | 14:13 | 2018-04-30 | 18:00 | 3,600 | 0             | 3,600 | 올리브내과의원<br>(문을선) | 서울 마포구 동교로        | 03980 | 폐문부재  |
| 3  | 20205906 | 1899053121379 | 25나8730 | 서린노외  | 2018-05-08 | 13:35 | 2018-05-08 | 18:00 | 4,200 | 0             | 4,200 | 올리브내과의원<br>(문을선) | 서울 마포구 동교로        | 03980 | 폐문부재  |
| 4  | 20205907 | 1899053121380 | 25나8730 | 서린노외  | 2018-05-09 | 12:46 | 2018-05-09 | 18:00 | 5,000 | 0             | 5,000 | 올리브내과의원<br>(문을선) | 서울 마포구 동교로        | 03980 | 폐문부재  |
| 5  | 20206195 | 1899053121382 | 37호2753 | 북정역   | 2018-05-02 | 14:19 | 2018-05-02 | 18:19 | 2,400 | 0             | 2,400 | 김정희              | 대구광역시 수성구<br>천을로  | 42262 | 폐문부재  |
| 6  | 20205684 | 1899053121383 | 37호7855 | 천호역   | 2018-04-05 | 18:23 | 2018-04-05 | 22:47 | 7,900 | 0             | 7,900 | 신자은(연금메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br>왕산로 | 02584 | 폐문부재  |
| 7  | 20205808 | 1899053121384 | 54호8835 | 동대문2  | 2018-04-22 | 12:05 | 2018-04-22 | 12:39 | 2,800 | 0             | 2,800 | ㈜네비웍스            | 서울특별시 구로구<br>구로동  | 08390 | 수취인불명 |
| 8  | 20205672 | 1899053121386 | 62호6177 | 마포유수지 | 2018-04-05 | 10:45 | 2018-04-05 | 12:29 | 5,200 | 0             | 5,200 | 주무영종합건축사<br>사무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br>판교로 | 13487 | 이시불명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78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18.06월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09.27. ~ 2018.10.11.(15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 02-2290-6200)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연번 |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차종                | 주차장          | 입차일자       | 입차일시  | 출차일자       | 출차일시  | 부과금액    | 가산금 | 주차요금   | 소유자              | 주소                   | 우편번호  | 반송사유  |
|----|----------|----------|-------------------|--------------|------------|-------|------------|-------|---------|-----|--------|------------------|----------------------|-------|-------|
|    | 30건      |          |                   |              |            |       |            |       | 248,600 |     |        |                  |                      |       |       |
| 1  | 20206549 | 02755252 | 에쿠스<br>(EQUUS)    | 수락산역         | 2018-06-27 | 13:12 | 2018-06-27 | 15:06 | 2,300   | 0   | 2,300  | 송섭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br>고릉말로  | 11508 | 수취인불명 |
| 2  | 20206283 | 03가9658  | 스포티지              | 동대문2         | 2018-06-27 | 07:44 | 2018-06-27 | 10:10 | 6,000   | 0   | 6,000  | 추성호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11453 | 폐문부재  |
| 3  | 20206358 | 07도4443  | SM5 LPLi          | 동대문2         | 2018-06-27 | 13:53 | 2018-06-27 | 14:23 | 2,400   | 0   | 2,400  | 이해숙              |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br>계양로   | 17981 | 이시불명  |
| 4  | 20206540 | 09가1399  | SM7               | 창동역          | 2018-06-05 | 20:44 | 2018-06-05 | 21:22 | 500     | 0   | 500    | 김원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br>화정천동로 | 15249 | 폐문부재  |
| 5  | 20206136 | 15가7808  | i30               | 학여울역         | 2018-06-09 | 12:25 | 2018-06-09 | 15:17 | 5,200   | 0   | 5,200  | 김외순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br>매자리길  | 12798 | 폐문부재  |
| 6  | 20206369 | 15대1082  | C200 CGI          | 동대문2         | 2018-06-27 | 12:15 | 2018-06-27 | 15:07 | 14,000  | 0   | 14,000 | 박정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br>사가정로   | 02553 | 폐문부재  |
| 7  | 20206356 | 16우6941  | 그랜저<br>(GRANDEUR) | 동대문2         | 2018-06-27 | 11:15 | 2018-06-27 | 14:13 | 14,400  | 0   | 14,400 | 송채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br>장안로   | 13583 | 이시불명  |
| 8  | 20206548 | 20하6533  | K5                | 수서역          | 2018-06-14 | 19:05 | 2018-06-14 | 23:25 | 13,000  | 0   | 13,000 | 주식회사<br>장원나이스센터카 | 서울특별시 송파구<br>새말로     | 05841 | 수취인불명 |
| 9  | 20206286 | 21두5445  | QM3               | 동대문2         | 2018-06-27 | 09:49 | 2018-06-27 | 11:25 | 8,000   | 0   | 8,000  | 현명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br>안양천서로 | 13995 | 수취거절  |
| 10 | 20206300 | 26다0985  | K5                | 동대문2         | 2018-06-27 | 12:20 | 2018-06-27 | 12:55 | 1,400   | 0   | 1,400  | 주재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br>탄중로  | 10247 | 폐문부재  |
| 11 | 20206537 | 27나1083  | 제네시스<br>(GENESIS) | 구로디지털<br>단지역 | 2018-06-12 | 14:25 | 2018-06-13 | 02:13 | 21,300  | 0   | 21,300 | 김수호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br>송죽로  | 58299 | 폐문부재  |
| 12 | 20206541 | 27라7342  | 라세티 1.5D AT       | 창동역          | 2018-06-06 | 09:03 | 2018-06-06 | 20:04 | 13,300  | 0   | 13,300 | 이명희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br>장거리길  | 11009 | 폐문부재  |
| 13 | 20206366 | 27아0627  | 모닝                | 동대문2         | 2018-06-27 | 11:40 | 2018-06-27 | 15:01 | 8,200   | 0   | 8,200  | 윤선수              | 경기도 양주시 화정로          | 11451 | 폐문부재  |
| 14 | 20206174 | 30소3094  | 스토닉               | 잠실역          | 2018-06-17 | 16:37 | 2018-06-17 | 19:12 | 12,400  | 0   | 12,400 | 박현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br>관악로     | 08726 | 폐문부재  |

| 연번 |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차종                      | 주차장         | 입차일자       | 입차일시  | 출차일자       | 출차일시  | 부과금액   | 가산금 | 주차요금   | 소유자          | 주소               | 우편번호  | 반송사유          |
|----|----------|-----------|-------------------------|-------------|------------|-------|------------|-------|--------|-----|--------|--------------|------------------|-------|---------------|
| 15 | 20206534 | 33아5157   | 마티즈 0.8S AT             | 신대방역        | 2018-06-09 | 01:35 | 2018-06-09 | 01:56 | 300    |     |        | 0            | 300              | 김종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 16 | 20206351 | 36보3804   | Q5 35 TDI quattro       | 동대문2        | 2018-06-27 | 13:26 | 2018-06-27 | 13:57 | 2,800  | 0   | 2,800  | 정선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장로    | 04700 | 폐문부재          |
| 17 | 20206389 | 41우4104   | 마티즈 1.0 DOHC            | 산설동<br>풍물시장 | 2018-06-30 | 09:00 | 2018-06-30 | 19:00 | 9,000  | 0   | 9,000  | 노유환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 18110 | 폐문부재          |
| 18 | 20206584 | 45우4361   | K5 하이브리드                | 개화산역        | 2018-06-05 | 14:19 | 2018-06-05 | 15:14 | 500    | 0   | 500    | 강부식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 22762 | 폐문부재          |
| 19 | 20206342 | 46보6302   | 제네시스 (GENESIS)          | 동대문2        | 2018-06-27 | 10:20 | 2018-06-27 | 13:21 | 7,400  | 0   | 7,400  | 김춘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 08726 | 폐문부재          |
| 20 | 20206347 | 48라0701   | 레이                      | 동대문2        | 2018-06-27 | 13:05 | 2018-06-27 | 13:43 | 1,600  | 0   | 1,600  | 박상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02598 | 폐문부재          |
| 21 | 20206091 | 53라6472   | 쏘나타 (SONATA)            | 종묘          | 2018-06-02 | 12:16 | 2018-06-02 | 14:27 | 10,800 | 0   | 10,800 | 권주희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 17902 | 폐문부재          |
| 22 | 20206107 | 53마H497   | BMW 528i                | 사당노외        | 2018-06-05 | 19:01 | 2018-06-05 | 23:03 | 12,200 | 0   | 12,200 | 조혜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06544 | 수취인불명         |
| 23 | 20206177 | 53무0526   | 모닝                      | 잠실역         | 2018-06-17 | 13:36 | 2018-06-17 | 19:14 | 13,600 | 0   | 13,600 | 주진숙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사청로  | 18266 | 폐문부재          |
| 24 | 20206278 | 54루8454   | SM7                     | 북정역         | 2018-06-26 | 11:11 | 2018-06-26 | 15:39 | 2,700  | 0   | 2,700  | 이인숙외1(조춘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 13645 | 폐문부재          |
| 25 | 20206304 | 54마4365   | 싼타페 (SANTAFE)           | 동대문2        | 2018-06-27 | 12:05 | 2018-06-27 | 13:05 | 4,800  | 0   | 4,800  | 김동연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말구리길 | 10830 | 폐문부재          |
| 26 | 20206583 | 55수0977   | 모닝                      | 개화산역        | 2018-06-05 | 09:09 | 2018-06-05 | 14:12 | 500    | 0   | 500    | 김영상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 10068 | 폐문부재          |
| 27 | 20206236 | 66무6697   | 아반떼 (AVANTE)            | 산설동<br>풍물시장 | 2018-06-20 | 11:26 | 2018-06-20 | 19:00 | 13,600 | 0   | 13,600 | 우상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 08036 | 폐문부재          |
| 28 | 20206265 | 78마2252   | 그랜드 스타렉스 (GRAND STAREX) | 한강천역        | 2018-06-25 | 05:45 | 2018-06-25 | 16:57 | 33,700 | 0   | 33,700 | JIN LONGHUAN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08304 | 폐문부재          |
| 29 | 20206113 | 89노3083   | 코란도-밴                   | 산설동<br>풍물시장 | 2018-06-06 | 14:13 | 2018-06-06 | 19:00 | 8,700  | 0   | 8,700  | 임종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 05745 | 수취인불명         |
| 30 | 20206128 | 경기31라4041 | SM520                   | 종묘          | 2018-06-08 | 13:48 | 2018-06-08 | 14:35 | 4,000  | 0   | 4,000  | 강용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 16336 | 폐문부재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8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84호(1983.03.14.)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50호(1983.12.3.)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사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6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사항)
3. 사업의 내용 : 중량물재생센터 관리동 승강기 및 실험실 증축공사
  - 기존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440㎡
  - 변경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534.58㎡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소장
5. 사업착수예정일 : 2018년 10월
6. 사업준공예정일 : 공사착수일로부터 2개월
7. 열람기간 : 2018. 10. 4. ~ 2018. 10. 18.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 ☎ 2211-2524)
9.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90호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주요 개정사항 공고**

시민청 공간 운영 변경에 따라 대관규정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현행화 및 일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있던 공간별 대관료를 동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개정(2017.3.23.)에 맞춰 조정·개정하고자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준용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 현행                                                                                                                                                                                                                                                                                 | 개선(안)                                                                                                                                                                                                                                                                                                                                                                    |
|------------------------------------------------------------------------------------------------------------------------------------------------------------------------------------------------------------------------------------------------------------------------------------|--------------------------------------------------------------------------------------------------------------------------------------------------------------------------------------------------------------------------------------------------------------------------------------------------------------------------------------------------------------------------|
| <p>현행 규정 없음</p> <p>4.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p> <p>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관 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p> | <p>4. 미풍양속 및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정치적인 의도의 행사, 종교의 선교 행사, 반사회적 목적의 행사 등)</p> <p>5.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의 유료 대관 행사의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p> <p>6.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관 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p> |

○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 구체화 및 강화 위해 규정 신설

| 현행                                                                                                                                                                                                                                    | 개선(안)                                                                                                                                                                                                                                                                                                                                                                                                                                                            |
|---------------------------------------------------------------------------------------------------------------------------------------------------------------------------------------------------------------------------------------|------------------------------------------------------------------------------------------------------------------------------------------------------------------------------------------------------------------------------------------------------------------------------------------------------------------------------------------------------------------------------------------------------------------------------------------------------------------|
| <p>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p> <p>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1.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시민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p> <p>2. 시민청 내에서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p> | <p>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p> <p>1. 대관 시설과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p> <p>2. 화기 사용 금지의 의무</p> <p>3. 시민청 운영 시간 및 준비와 철수를 포함한 대관 이용시간 엄수의 의무</p> <p>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1.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시민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p> <p>2. 시민청 내에서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p> <p>3. 시민청 내 협의하지 않은 물품 반입 및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 반입 등 타이용자의 시민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p> <p>4.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유인물의 부착 및 설치 행위</p> |

○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18조 : 규정 미숙지 및 규정 위반시의 책임

-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 구체화 및 강화 위해 규정 신설

| 현행                                                                                      | 개선(안)                                                                                                                                           |
|-----------------------------------------------------------------------------------------|-------------------------------------------------------------------------------------------------------------------------------------------------|
| 이 규정의 미숙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① 이 규정의 미숙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한다.<br>② 규정 위반에 대한 시민청의 시정 요청 불이행시 즉시 대관행사 종료 및 강제 퇴장에 응한다. |

나. 공간별 대관료 부과 조정(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부과중인 서울시청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를 동일 조례의 개정\*에 맞춰, 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17.3.23.)  
 ⇒ (개정내용) : 부지면적계산 방식을 ' 기존, 층별 가중적용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 개선'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대관료)\*에 따라 부과중인 대관료에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합산· 부과.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대관료) 제2항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구분      | 시 설 물 | 면적(㎡)  |          | 시간당 대관료  |         |         | 비고  |
|---------|-------|--------|----------|----------|---------|---------|-----|
|         |       | 현 재    | 조 정(안)*  | 현 재      | 조 정(안)  | 인상률 (%) |     |
| 시청 시민청  | 지하 1층 | 시민청갤러리 | 245.92   | 238.88   | 25,000원 | 40,000원 | 60% |
|         |       | 활짝라운지  | 391.34   | 391.34   | 110원/㎡  | 160원/㎡  | 45% |
|         |       | 시민플라자A | 2,018.38 | 2,018.38 | 110원/㎡  | 160원/㎡  | 45% |
|         |       | 시민플라자B | 796.42   | 796.42   | 90원/㎡   | 160원/㎡  | 78% |
|         | 지하 2층 | 태평홀    | 366.85   | 348.06   | 30,000원 | 58,000원 | 93% |
|         |       | 워크숍룸   | 195.70   | 105.8    | 15,000원 | 18,000원 | 20% |
|         |       | 동그라미방  | 166.08   | 73.2     | 13,000원 | 13,000원 | 0%  |
|         |       | 바스락홀   | 331.54   | 285.6    | 26,000원 | 48,000원 | 85% |
| 삼각산 시민청 | 2동 2층 | 워크숍룸 1 | 52.80    | -        | -       | 2,000원  | 57% |
|         |       | 워크숍룸 2 | 31.40    | -        | -       | 2,000원  | 97% |
|         | 2동 3층 | 워크숍룸 3 | 46.00    | -        | -       | 2,000원  | 66% |
|         |       | 시민청갤러리 | 51.10    | -        | -       | 2,000원  | 59% |

- 조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정 2013. 1. 30.

개정 2015. 11. 2.

개정 2018. 9.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고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민청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시민청’ 이라 함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② ‘대관’ 이라 함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재단으로부터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대관자’ 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대관이 가능한 공간 및 시간은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 내 대관안내 항목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제4조(대관료)**

- ① 재단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과 운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③ 공간별 대관료는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된 불임1의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를 따른다.
- ④ 대관자는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료 감면)**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할 수 있다.

## 1. 대관료 전액감면

- 가.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나. 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2. 대관료 반액감면

- 가.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 나. 재단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주관하는 행사 중에 공익성, 개방성(불특정 시민 다수가 무료관람/체험 등 수혜를 받는 경우)이 있으며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 또는 재단이 후원 또는 공동주관행사로 유치한 경우
4. 기타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가 시민청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대관허가 절차)

- ① 재단은 이듬해 1년간의 대관신청을 접수받아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기대관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은 시민청 전체 대관 일수의 1/2을 넘을 수 없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기대관 이외에 수시대관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태평홀, 이벤트홀, 바스락홀, 워크샵룸, 동그라미방에 대한 대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민청갤러리, 시민플라자는 재단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연속된 일자로 진행되는 행사는 1회로 보며,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월 4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대관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관 사용에 있어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물품반입 등의 사항이 있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재단은 대관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7조(대관허가 기준)

- ① 재단은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 가능성·행사 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민청 운영 목적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의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2.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시민청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민청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시민청 운영에 있어 방화 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풍양속 및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정치적인 의도의 행사, 종교의 선교행사, 반사회적 목적의 행사 등)
  5.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의 유료 대관 행사의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6.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관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② 재단은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2. 대관허가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대관자가 대관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4. 시민청 공간별 사용수칙과 대관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재단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제9조(대관 계약의 체결)

① 대관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단체의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대표자/ 개인의 사용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관자의 대관 신청과 재단의 대관허가 통보, 대관료의 납부로 대관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정한다.

#### 제10조(대관기간 연장)

시민청 대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예정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대관 현황을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 제11조(대관계약 취소)

① 대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100% 반환)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80% 반환)
3.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60% 반환)
4. 사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대관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남은 일수의 50% 반환)

#### **제12조(사용내용 변경)**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재단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변경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시민청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재단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 종료 후, 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시민청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재단은 위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대관자는 재단의 사전허가 없이 시민청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허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대관 시설과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2. 화기 사용 금지의 의무.
  3. 시민청 운영 시간 및 준비와 철수를 포함한 대관 이용시간 엄수의 의무.

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시민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시민청 내에서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시민청 내 협의하지 않은 물품 반입 및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 반입 등 타이용자의 시민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4.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유인물의 부착 및 설치 행위

③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대관자는 시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단이 정하는 시민청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대관자는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변경규정의 적용)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대관허가 및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관계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관례에 따른다.

#### 제18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 위반시의 책임)

① 이 규정의 미숙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한다.

② 규정 위반에 대한 시민청의 시정 요청 불이행시 즉시 대관행사 종료 및 강제 퇴장에 응한다.

<붙임 1>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



서울문화재단

##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



시민청

### 1. 대관 시설 현황

| 구분         | 시 설 물  | 층 별   | 면적(㎡)    | 부 대 시 설          | 용도           | 사용인원 |
|------------|--------|-------|----------|------------------|--------------|------|
| 시청<br>시민청  | 시민청갤러리 | 지하 1층 | 238.88   | 전시파티션            | 기획전시         |      |
|            | 활짝라운지  |       | 391.34   | 음향장비             | 전시, 공연, 행사   |      |
|            | 시민플라자A |       | 2,018.38 | .                | 전시, 체험행사     |      |
|            | 시민플라자B |       | 796.42   | .                | 전시, 체험행사     |      |
|            | 태평홀    | 지하 2층 | 348.06   |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결혼식 | 100명 |
|            | 워크숍룸   |       | 105.8    | PC,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 60명  |
|            | 동그라미방  |       | 73.2     | PC,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 30명  |
|            | 바스락홀   |       | 285.6    | 무대, 조명, 음향, 영상장비 | 공연, 행사       | 100명 |
| 삼각산<br>시민청 | 워크숍룸 1 | 2동 2층 | 52.80    |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 31명  |
|            | 워크숍룸 2 |       | 31.40    |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 16명  |
|            | 워크숍룸 3 | 2동 3층 | 46.00    | 음향, 영상장비         | 세미나, 회의      | 46명  |
|            | 시민청갤러리 |       | 51.10    | 조명, 영상장비         | 전시, 체험행사     |      |

### 2. 시설별 대관료

| 구분         | 시 설 물  | 면적(㎡)    | 시간당 대관료(원) |
|------------|--------|----------|------------|
| 시청<br>시민청  | 시민청갤러리 | 238.88   | 40,000     |
|            | 활짝라운지  | 391.34   | 160원/㎡     |
|            | 시민플라자A | 2,018.38 | 160원/㎡     |
|            | 시민플라자B | 796.42   | 160원/㎡     |
|            | 태평홀    | 348.06   | 58,000     |
|            | 워크숍룸   | 105.8    | 18,000     |
|            | 동그라미방  | 73.2     | 13,000     |
|            | 바스락홀   | 285.6    | 48,000     |
| 삼각산<br>시민청 | 워크숍룸 1 | 52.80    | 2,000      |
|            | 워크숍룸 2 | 31.40    | 2,000      |
|            | 워크숍룸 3 | 46.00    | 2,000      |
|            | 시민청갤러리 | 51.10    | 2,000      |

※ 대관 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

※ 장비 사용 시 소모품 비용은 대관자 부담

〈별지 제1호 서식〉 대관허가신청서 〈개정 2018.09.〉



## 시민청 대관허가신청서



## 1. 대관개요

|         |                                                                                        |       |  |      |  |
|---------|----------------------------------------------------------------------------------------|-------|--|------|--|
| 대관장소    |                                                                                        | 신청자명  |  | 소 속  |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참석인원 |  |
| 행 사 명   |                                                                                        |       |  |      |  |
| 행사내용    | ▶ 행사진행 일정<br>-<br>▶ 프로그램 주요내용<br>-<br>▶ 추가장비 반입 및 설비 설치 계획(장비규모, 운반계획, 일정 등)<br>-      |       |  |      |  |
| 요청사항    | ▶ 사용 요청품목(시민청 보유집기)<br>-<br>▶ 기타 협조요청 사항<br>-<br>※ 행사내용과 요청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  |      |  |
| 프로그램 종류 | 대 관                                                                                    | 공연일자  |  | 신청일자 |  |
| 대관일시    | ※ 대관 신청시, 행사 준비 및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

위의 계획에 따라 대관행사가 진행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설치계획서 〈개정 2015.11.〉

|                                                                                             |                          |                                                                                     |
|---------------------------------------------------------------------------------------------|--------------------------|-------------------------------------------------------------------------------------|
| <br>서울문화재단 | <b>시민청 대관 시설물 설치 계획서</b> |  |
|---------------------------------------------------------------------------------------------|--------------------------|-------------------------------------------------------------------------------------|

|              |                       |                  |       |   |
|--------------|-----------------------|------------------|-------|---|
| 행 사 명        |                       |                  |       |   |
| 주요내용         | ※설치도면 첨부              |                  |       |   |
| 작업인원         |                       |                  |       |   |
| 설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   |
| 철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   |
| 작 업<br>담 당 자 | 성 명                   |                  | 소속/지위 | / |
|              | 전 화                   | (사무실)            | 팩 스   |   |
|              |                       | (핸드폰)            | 이 메 일 |   |
| 확인사항         | 장비반입                  | ※화물엘리베이터 사용유무    |       |   |
|              | 전기사용                  | ※사용 전력량          |       |   |
|              | 집기                    | ※테이블 및 의자 등 사용유무 |       |   |
|              | 기타                    | ※기타 시설 및 장비 사용유무 |       |   |
|              |                       |                  |       |   |

첨부 : 시설설치 도면 및 배치도면

위와 같이 시민청 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관계약서 〈개정 2018.09.〉



## 시민청 대관계약서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민청을 대관함에 있어서 (재)서울문화재단을 “재단”, 사용자를 “대관자” 라 하고 다음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당사자)

- ① “재단”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② “대관자”

| 대관자 | 개 인                   |  | 단 체               |  |
|-----|-----------------------|--|-------------------|--|
|     | 성명                    |  | 단체명               |  |
|     |                       |  | 대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br>(고유번호) |  |
| 주소  |                       |  |                   |  |
| 연락처 | ※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한 연락처 기재 |  | E-mail            |  |

### 제2조(계약내용)

|          |      |   |
|----------|------|---|
| 신청<br>내용 | 행사명  |   |
|          | 대관일시 | ~ |
|          | 대관공간 |   |
|          | 비고   |   |

※ 대관신청 시 대관자가 제출한 대관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대관계약을 진행한다.

### 제3조(대관료) ※ 대관료 전액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한 내 미납시, 대관계약 취소)

|      |                                       |
|------|---------------------------------------|
| 대관료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산출근거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1-429463 / 예금주: (재)서울문화재단 |

**제4조(사용자의 행위제한)** “대관자”는 “재단”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① 사용허가조건, 신청단체(인) 변경행위
- ② 사용시설 변경 행위 및 대관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제5조(사용자의 의무)** “대관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재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 및 정지명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단”은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① 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②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간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③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공간대관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④ 제4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⑤ 당초 사용허가된 내역과 다른 시설물의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제7조(배상책임)**

- ① “재단”은 “대관자”가 제6조에 해당되어 사용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대관자”는 시설물 사용 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대관사용 중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원인이 대관자의 부주의만이 아닌 기타 원인이 포함될 경우 “재단”과 “대관자”가 책임 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8조(적용규정)**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민청 대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재단”은 천재지변 발생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11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대 관 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대관연장신청서 〈개정 2013. 10.〉

|                                                                                                    |                     |                                                                                     |
|----------------------------------------------------------------------------------------------------|---------------------|-------------------------------------------------------------------------------------|
| <br><b>서울문화재단</b> | <b>시민청 대관연장 신청서</b> |  |
|----------------------------------------------------------------------------------------------------|---------------------|-------------------------------------------------------------------------------------|

※ 연장신청의 경우, 공간사용 현황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 연장신청자

|      |         |  |
|------|---------|--|
| 대관주체 | 소속(대표자)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E-mail  |  |

### 2. 연장신청 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 사 명 |      |      |
| 대관공간  |      |      |
| 대관시간  |      |      |
| 대관용도  |      |      |
| 추가사항  |      |      |

### 3. 연장신청 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재단이 허가한 대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관취소신청서 〈개정 2013. 01.〉

|                                                                                                    |                     |                                                                                     |
|----------------------------------------------------------------------------------------------------|---------------------|-------------------------------------------------------------------------------------|
| <br><b>서울문화재단</b> | <b>시민청 대관취소 신청서</b> |  |
|----------------------------------------------------------------------------------------------------|---------------------|-------------------------------------------------------------------------------------|

## 1. 취소신청자

|      |         |  |
|------|---------|--|
| 대관주체 | 소속(대표자)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E-mail  |  |

## 2. 취소신청

|       |  |
|-------|--|
| 행 사 명 |  |
| 대관공간  |  |
| 대관시간  |  |
| 대관용도  |  |
| 비 고   |  |

## 3. 취소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재단이 허가한 대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대관변경신청서 〈개정 2015.11.〉



## 시민청 대관변경신청서



## 1. 변경신청자

|      |         |  |
|------|---------|--|
| 대관주체 | 소속(대표자)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E-mail  |  |

## 2. 변경신청 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 사 명   |      |      |
| 대관공간    |      |      |
| 대관시간    |      |      |
| 대관용도    |      |      |
| 대 관 료   |      |      |
| 추가 변경사항 |      |      |

## 3. 변경신청 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재단이 허가한 대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99호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황사중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 ***호<br>(임학동, ***아파트) | 일시: 2018-07-27 18:03<br>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br>차량: *****6134<br>내용: 제한 축하중 1.88t 초과 | 과태료 50만원 부과 |
| 김태홍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5길 **(삼동)                   | 일시: 2018-08-09 10:10<br>장소: 목동교동축IC<br>차량: *****5933<br>내용: 제한 총중량 3.45t 초과, 2회   | 과태료 70만원 부과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14호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지구외지구)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 ' 68.1.1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21( ' 08.4.1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56( ' 18.3.2.)호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 원 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외지구, 신림공영차고지)

나.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다. 면 적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시설외지구 10,277,293㎡ 중 12,283㎡

라. 공원조성계획 주요변경 내용

- 신림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조경, 휴양시설, 녹지 및 기타 설치

마. 열람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바.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시 주차계획과(☎ 02-2133-2374)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 02-879-6522)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6층 주차계획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1동(봉천동)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 우편으로 제출시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함.

## 구 고 시

### ◆ 중구고시 제2018-100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호(2003.03.1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33호(2007.5.10.)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된 중구 순화동 1-1 일대 이화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중 구 청 장

#### 1. (변경)결정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학교 및 도로 용도로 상호 점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 도로 및 학교법인 이화학원 학교 부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하여 토지 교환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시설결정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학교  | 고등학교<br>(이화여고·이화외고) | 중구 순화동<br>1-1번지 일대 | 54,190.5  | 감) 66.1 | 54,124.4 | 서울시 고시<br>제2003-37호<br>(2003.03.10) |     |

- 변경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변경 | 학 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결정면적<br/>기 정 : 54,190.5 ㎡<br/>변 경 : 54,124.4 ㎡<br/>감) 66.1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중구 및 학교법인 이화학원 간 상호 점유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가로환경과-5210호(2018.04.03.)]한바, 도시계획시설(학교) 내 도로로 사용 중인 부지를 제척</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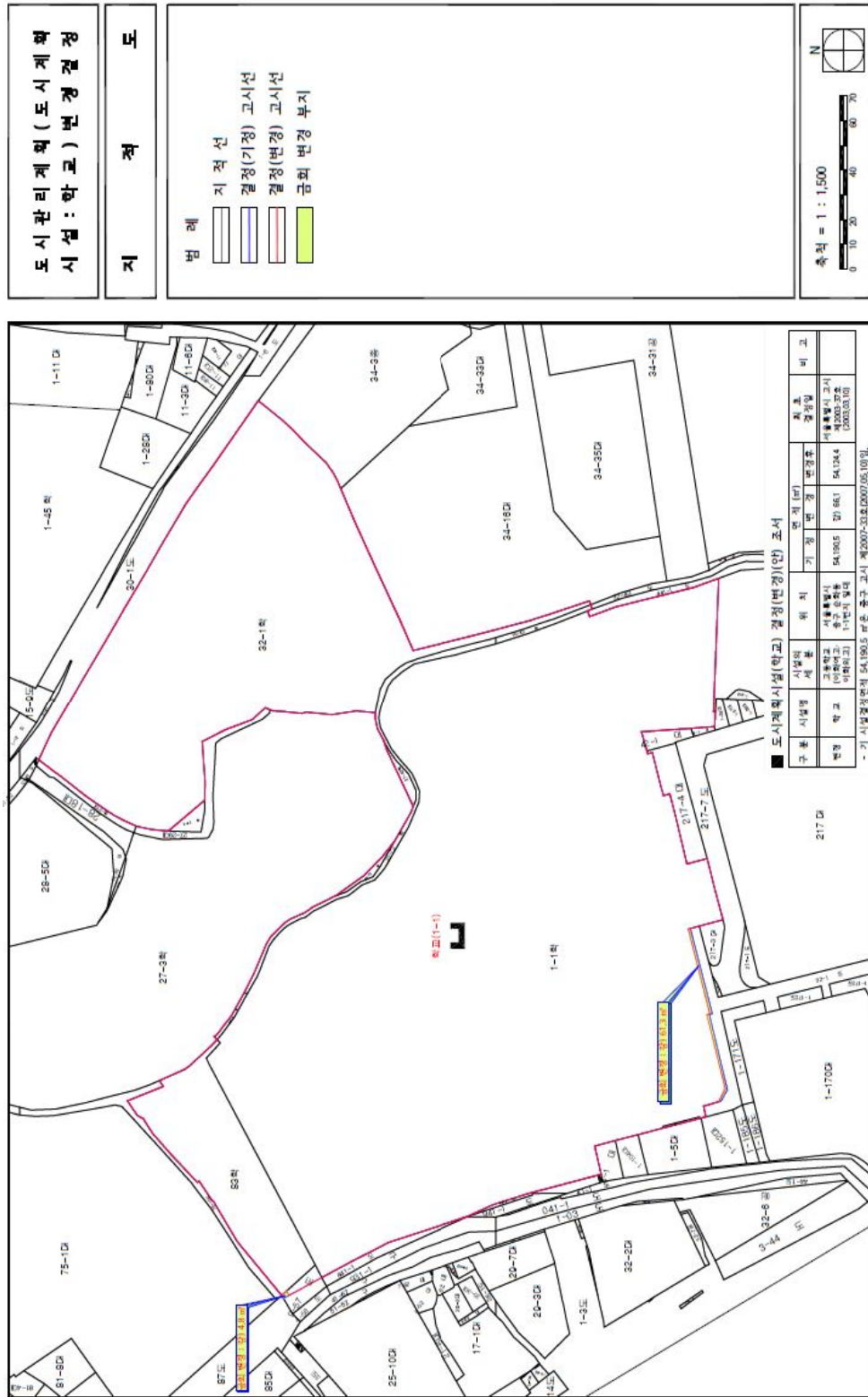
○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건 폐 율 (%) | 용 적 륜 (%) | 높 이 (층) | 건축제한완화                                    | 비 고                     |
|-----------|-----------|---------|-------------------------------------------|-------------------------|
| 30 이하     | 120 이하    | 5층 이하   | 기존5층 이상 건축물<br>8층 이하로 결정,<br>신축 기숙사 7층 이하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이하) |

4.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사무실에 비치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전화 02-3396-5754)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도





## ◆ 광진구고시 제2018-110호

**도시공원(소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호 일대 구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시고시 제2008-221호, 2008. 7. 3.)된 도시공원(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02-450-7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4일  
광진구청장

가. 결정취지 : 구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소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임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호 일대

다. 면 적 : 1,374.5㎡

라.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02-450-7775)

### 도시공원(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 구 분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조성계획(최초) |         |        |            | 비 고 |
|------------|-------------|---------------------------------|----------|---------|--------|------------|-----|
|            |             |                                 | 동수(동)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br>(기) |     |
| 계          | 1,374.5     | 248.0                           | -        | -       | -      | 17         |     |
| 소공원        | 1,374.5     | 248.0                           | -        | -       | -      | 17         |     |
| 시설율(법정20%) |             | (248 / 1,374.5) × 100 = 18.04 % |          |         |        |            |     |
| 건폐율(법정20%) |             | -                               |          |         |        |            |     |

### 나. 시설조서

| 구 분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조성계획(최초)  |             |              |            | 비 고 |
|----------|-------------|-------------|-----------|-------------|--------------|------------|-----|
|          |             |             | 동수<br>(동) | 바닥면적<br>(㎡) | 연 면 적<br>(㎡) | 공작물<br>(기) |     |
| 합 계      | 1,374.5     | 248.0       |           |             |              | 17         |     |
| 기반<br>시설 | 소 계         | 248.0       |           |             |              | -          |     |
|          | 도로          | 139.0       |           |             |              | -          |     |
|          | 광 장         | 109.0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 39.0        | 6.0         |           |             |              | 9          |     |
| 유흥시설     | 16.0        | -           |           |             |              | 2          |     |
| 운동시설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6          |     |
| 녹지,기타    | 1,071.5     | -           |           |             |              | -          |     |

| 구분            | 시설명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br>(㎡) | 시설면적<br>(㎡) | 구 조 | 건축물(㎡) |      | 공작물<br>(기) | 비 고 |     |
|---------------|--------|-------|--------|-------------|-------------|-----|--------|------|------------|-----|-----|
|               |        |       |        |             |             |     | 규모     | 연면적  |            |     |     |
|               |        |       |        |             |             |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기본<br>시설      | 총 계    |       |        | 1,374.5     | 248.0       |     |        |      | 17         |     |     |
|               | 계      | -     | -      | 248.0       | 242.0       |     |        |      | -          |     |     |
|               | 도 로    | 산1004 | 전지역    | 139.0       | 139.0       |     |        |      | -          |     |     |
|               | 광 장    | 가-1   | 대상지남서측 | 103.0       | 103.0       |     |        |      | -          |     |     |
|               | 광 장    | 가-2   | 대상지남동측 | 6.0         | -           |     |        |      | -          |     |     |
| 휴양<br>시설      | 계      | -     | -      | 39.0        | 6.0         |     |        |      | 9          |     |     |
|               | 휴게마당   | 나-1   | 대상지중앙  | 17.0        | -           |     |        |      | -          |     |     |
|               | 포켓쉼터   | 나-2   | 대상지서측  | 11.0        | 3.0         |     |        |      | -          |     |     |
|               | 포켓쉼터   | 나-3   | 대상지남측  | 11.0        | 3.0         |     |        |      | -          |     |     |
|               | 평의자    | ①     | 전지역    | -           | -           | 목재  |        |      | 5          |     |     |
| 유희<br>시설      | 앉음벽    | ②     | 전지역    | -           | -           | 석재  |        |      | 4          |     |     |
|               | 계      | -     | -      | 16.0        | -           | -   |        |      | 2          |     |     |
|               | 운동마당   | 다     | 대상지중앙  | 16.0        | -           | -   |        |      | -          |     |     |
|               | 스텐딩사이클 | ③     | 다      | -           | -           | 철재  |        |      | 1          |     |     |
|               | 크로스컨트리 | ④     | 다      | -           | -           | 철재  |        |      | 1          |     |     |
| 관리<br>시설      | 계      | -     | -      | -           | -           | -   |        |      | 6          |     |     |
|               | 공원등    | ⑤     | 전지역    | -           | -           | 목재  |        |      | 5          |     |     |
|               | 안내판    | ⑥     | 가-1    | -           | -           | 목재  |        |      | 1          |     |     |
| 녹지<br>및<br>기타 | 계      | -     | -      | 1,071.5     |             |     |        |      |            |     |     |
|               | 녹지     | -     | -      | 1,071.5     |             |     |        |      |            |     |     |

다.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연장<br>(m) | 면적<br>(㎡)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최초 | 합계  |    |    |           | 128.2     | 139.0     |     |       |     |    |
| 최초 | 신책로 | 3  | 1  | 1.2       | 54.2      | 65.0      | 산책로 | 대상지북측 | 가-1 |    |
| 최초 | 신책로 | 3  | 2  | 1.0       | 59.0      | 59.0      | 산책로 | 산-1   | 가-1 |    |
| 최초 | 신책로 | 3  | 3  | 1.0       | 6.0       | 6.0       | 산책로 | 나-1   | 산-2 |    |
| 최초 | 신책로 | 3  | 4  | 1.0       | 9.0       | 9.0       | 산책로 | 가-2   | 산-2 |    |



## ◆ 도봉구고시 제2018-126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쌍문동 342번지~283-9호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도 봉 구 청 장

## 1. 변경 결정 취지

- 마을버스의 운행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고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보도를 조성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점         | 종점           | 사용<br>형태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소로 | 3  | 52 | 6     | 집산<br>도로 | 300       | 쌍문동<br>342 | 쌍문동<br>296-2 | 일반<br>도로 | 1972.7.6.<br>서고시89호 |                           |
| 변경 | 소로 | 3  | 52 | 6~10  | 집산<br>도로 | 300       | 쌍문동<br>342 | 쌍문동<br>283-9 | 일반<br>도로 |                     | 일부구간<br>(L=100m)<br>폭원 확장 |

##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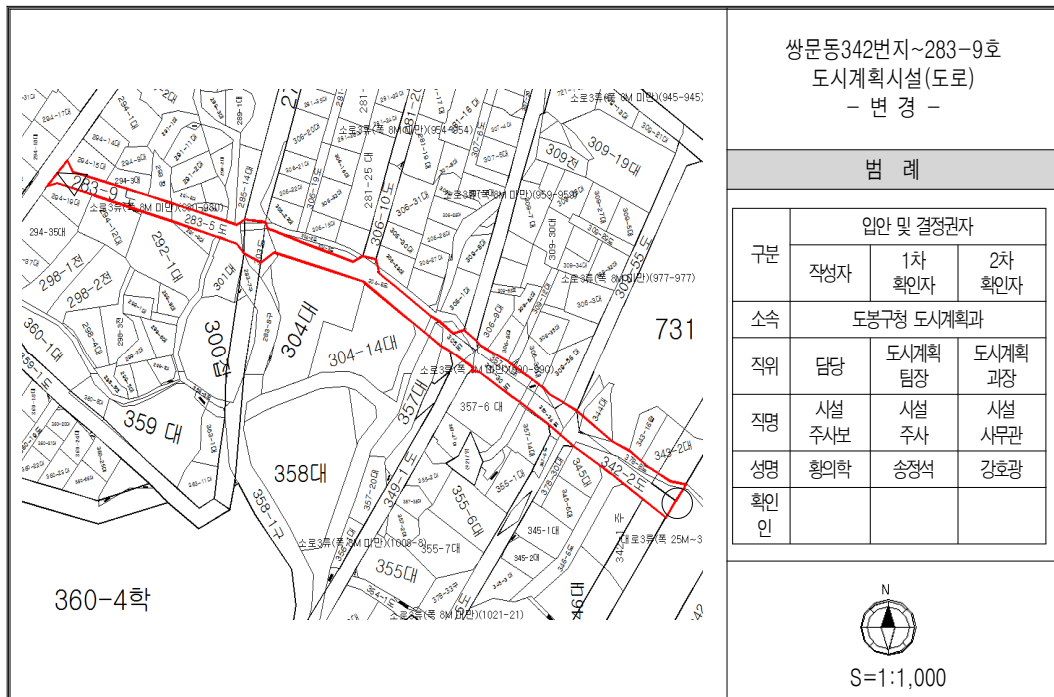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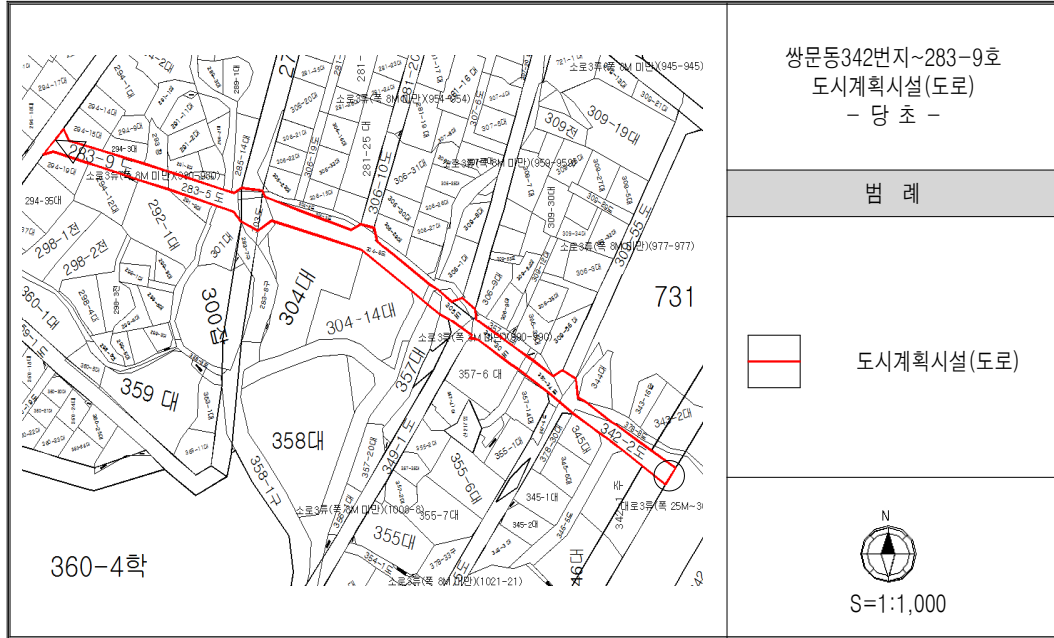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붙임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5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도



## ◆ 동작구고시 제2018-7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부분)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 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73호(2016. 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되었으며, 동작구고시 제2018-64호(2018. 8.2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드림스퀘어 (김현숙 외 106명)

다. 사업면적 : 지하보도 출입구 168.2㎡

라. 준공검사 내역

- 지하보도 출입구 : 폭 6m, 길이 25m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노량진로측 노량진역 방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02-820-9596) 또는 드림스퀘어(☎ 02-792-0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공 고

### ◆ 강북구공고 제2018-1022호

####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9호(2018.06.07)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169호(2018.02.08)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31호(2018.03.02)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19번지 외 1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 라. 규모 변경 : 당초 - 토지보상 4,844㎡ → 변경 - 4,474㎡ (감 370㎡)
-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br>(㎡) | 편집<br>면적<br>(㎡) | 지분   | 이용<br>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비고 |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  | 2필지          | 임야 | 36,249    | 4,844           |      |          | 성북구 하월곡동 23-1                         | 학교법인<br>동덕여학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미아동<br>산34-2 | 임야 | 2,266     | 694             | 8분의1 |          |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br>5동1006호               | 김창일           |       |    |    |
|    |              |    |           |                 | 8분의1 |          |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br>5동1006호               | 신용희           |       |    |    |
|    |              |    |           |                 | 8분의1 |          |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br>5동1006호               | 김윤석           |       |    |    |
|    |              |    |           |                 | 8분의1 |          |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br>5동1006호               | 김기석           |       |    |    |
|    |              |    |           |                 | 8분의1 |          |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br>195-25                | 김성화           |       |    |    |
|    |              |    |           |                 | 8분의1 |          | 용산구 이태원동 258-63                       | 김인정           |       |    |    |
|    |              |    |           |                 | 8분의1 |          | 미합중국 80303<br>콜로라도주볼더시<br>맥킨리드라이브4704 | 김성숙           |       |    |    |
|    |              |    |           |                 | 8분의1 |          | 강남구임구정동456<br>현대아파트73-505             | 김영철           |       |    |    |

| (변경후) |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br>(㎡) | 면적<br>(㎡) | 지분   | 이용<br>상황 | 소유자 |  | 성명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1     | 2필지<br>변동<br>산19-10 |    | 임야  |     | 4,844     | 4,4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미아동<br>산34-9        |    | 임야  | 694 | 694       | 694       | 8분의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미아동<br>산34-9        |    | 임야  | 694 | 694       | 694       | 8분의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미아동<br>산34-9        |    | 임야  | 694 | 694       | 694       | 8분의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등포구공고 제2018-1298호

##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42)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평동5가 50번지 일대 | -     | 증)246,114 | 246,114 | -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4. 열람내용 :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 강남구청 제2018-15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 '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5-265호(2015.9.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3423-6243)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세곡동 산1-1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돌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32,540㎡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 성 명 : 강남구청장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 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br>지 번     | 지목 | 지적(㎡)  | 사용 또는<br>수용면적<br>(㎡) | 소 유 자                    |                                                | 이 해 관 계 인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자의<br>권리명세 |
| 1  | 세곡동<br>산1-1번지  | 임야 | 25,644 | 10,768               | 에스케이 해운<br>주식회사 (위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br>남산그린빌딩 19층              |           |                                  |               |
|    |                |    |        |                      | 주식회사<br>하나자산<br>신탁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br>(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                                  |               |
|    |                |    |        |                      | 에스케이 해운<br>주식회사 (위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br>남산그린빌딩 19층              |           |                                  |               |
| 2  | 올현동<br>산10-1번지 | 임야 | 54,745 | 21,536               | 주식회사<br>하나자산<br>신탁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br>(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                                  |               |
|    |                |    |        |                      | 조계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올현동 325-7                            |           |                                  |               |
|    |                |    |        |                      | 조경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br>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           |                                  |               |
| 3  | 세곡동 93-4번지     | 전  | 534    | 8                    | 이규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br>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 박현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br>695 한양아파트 5-701 | 근저당권자         |
|    |                |    |        |                      | 이성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br>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           |                                  |               |
|    |                |    |        |                      | 이성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br>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           |                                  |               |
|    |                |    |        |                      | 이성애                      |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70<br>화성파크프레지던트 201-307           |           |                                  |               |
|    |                |    |        |                      | 정정현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br>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           |                                  |               |
|    |                |    |        |                      | 조재석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br>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           |                                  |               |
| 4  | 올현동 157        | 전  | 377    | 228                  | 조희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6,<br>에이동 1701호(우동, 한화꿈에그린센텀) |           |                                  |               |
|    |                |    |        |                      | 김동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340                           |           |                                  |               |

## ◆ 강남구공고 제2018-1564호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2.1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0호(1997.4.30.) 및 강남구고시 제2000-328호(2000.11.25.), 강남구고시 제2016-135호(2016.10.6.)로 변경 결정되어 제2017-4호(2017.1.12.)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17-105호(2017.7.20.)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분당선 선릉역 외 2개역사 승강설비설치 공사 사업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3423-61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개포동 일대  
(분당선 선릉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 분당선 선릉역 외 2개역사 승강설비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금회 변경)

| 구 분        | 면 적(㎡) |         | 내 용           | 비 고                                      |
|------------|--------|---------|---------------|------------------------------------------|
| 선릉역        | 당초     | 483.5   |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 6번 출입구 : 213.6㎡<br>· 9번 출입구 : 269.9㎡   |
|            | 변경     | 421.1   |               | · 6번 출입구 : 198.5㎡<br>· 9번 출입구 : 222.6㎡   |
|            | 증감     | 62.4    |               | · 6번 출입구 : 감)15.1㎡<br>· 9번 출입구 : 감)47.3㎡ |
| 개포동역       | 당초     | 366.3   |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 6번 출입구 : 166.2㎡<br>· 7번 출입구 : 200.6㎡   |
| 대모산<br>입구역 | 당초     | 507.3   |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 3번 출입구 : 205.3㎡<br>· 7번 출입구 : 302.0㎡   |
|            | 변경     | 469.5   |               | · 3번 출입구 : 205.3㎡<br>· 7번 출입구 : 264.2㎡   |
|            | 증감     | 37.8    |               | · 7번 출입구 : 감)37.8㎡                       |
| 합 계        | 당초     | 1,357.6 |               | 감)100.2㎡                                 |
|            | 변경     | 1,257.4 |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금회 변경)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감    |
|-------|---------------|---------------|--------|
| 착수예정일 | 2017년 01월 12일 | 2017년 01월 12일 | -      |
| 준공예정일 | 2018년 09월 30일 | 2018년 11월 30일 | 증) 2개월 |

-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4)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금회 변경)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
|     |         |        |    |             | 당초      | 변경     |              |          |
| 1   | 강남구 삼성동 | 172-66 | 도  | 43,711.9    | 269.9   | 222.6  | 서울특별시        | 감)47.3㎡  |
| 2   | 강남구 역삼동 | 802-31 | 도  | 8,610.7     | 16.6    | 15.2   | 서울특별시        | 감)1.4㎡   |
| 3   | 강남구 역삼동 | 804    | 도  | 107,101.0   | 197.0   | 183.3  | 서울특별시        | 감)13.7㎡  |
| 4   | 강남구 개포동 | 153-2  | 학  | 27.1        | 11.6    | 11.6   | 국토교통부        |          |
| 5   | 강남구 개포동 | 186-19 | 도  | 4,390.6     | 25.0    | 25.0   | 서울특별시<br>강남구 |          |
| 6   | 강남구 개포동 | 198    | 도  | 30,351.1    | 330.2   | 330.2  | 서울특별시        |          |
| 7   | 강남구 개포동 | 12-8   | 공  | 3,212.2     | 54.6    | 54.6   | 서울특별시<br>강남구 |          |
| 8   | 강남구 개포동 | 12-11  | 공  | 182.1       | 112.1   | 112.1  | 서울특별시<br>강남구 |          |
| 9   | 강남구 개포동 | 184-2  | 도  | 7,798.8     | 38.6    | 38.6   | 서울특별시        |          |
| 10  | 강남구 개포동 | 196    | 도  | 15,458.3    | 302.0   | 264.2  | 서울특별시        | 감)37.8㎡  |
| 합 계 |         |        |    | 220,843.8   | 1357.6  | 1257.4 |              | 감)100.2㎡ |



## ◆ 송파구공고 제2018-1387호

**도시관리계획(위례성길, 삼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85호(2009.7.23)로 결정된 ‘삼전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82호(2009.7.23)로 결정된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송파구 공고 제2016-1255호(2016.10.14.) 및 제2018-255호(2018.02.09.)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재)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송 파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8.10.04. ~ 2018.10.18.(14일간)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 위례성길<br>지구단위계획구역 | 송파구 방이동<br>180번지 일대 | 59,400 | 증) 9,625  | 69,025  | •서울시고시 제1994-189호<br>(1994.6.7) |
| 변경 |                | 삼전<br>지구단위계획구역   | 삼전동 7번지<br>일대       | 82,000 | 증) 54,002 | 136,002 | •서울시고시 제1996-46호<br>(1996.3.6)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기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에 관한 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변경 사항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이규용/☎ : 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송파구공고 제2018-1389호

##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9.24.)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잠실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위치 변경을 위하여, 송파구 공고 제2018-400호(2018.3.15.)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송 파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8.10.4. ~ 2018.10.18.(14일간)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면적(㎡)             |     |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406<br>(663.2)  | -   | 9,406<br>(663.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7,086<br>(663.2) | -   | 56,422.8<br>(663.2) |     |

주) ( )는 금회 공원 및 공공청사 위치교환 면적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

- 공원 : 위치변경

| 구 분 | 도면<br>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br>세 분 | 위치        |                          | 면적(㎡)   |    |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⑤          | 잠실7공원<br>(잠실) | 근린공원       | 잠실동 230일대 | 잠실동230(일부),<br>잠실동 230-1 | 6,613.3 | -  | 6,613.3 | 건고125호<br>( ' 74.12.6) | 위치<br>변경 |

■ 공공시설

- 공공청사: 위치변경

| 구 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공공청사 | 파출소,<br>동사무소 | 잠실동 230-1,3     | 991.8   | -           | -     | 송파구<br>2004-27<br>( ' 04.4.30) | 용적률 : 200%이하<br>건폐율 : 60%이하<br>높이 : 15m 이하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파출소          | 잠실동 230-3       | 991.8   | 감)<br>663.2 | 328.6 | 송파구<br>2004-27<br>( ' 04.4.30) | "                                          |
| 신설  | ②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잠실동 230<br>(일부) | -       | 증)<br>663.2 | 663.2 | -                              | 용적률 : 200%이하<br>건폐율 : 60%이하<br>높이 : 25m 이하 |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 이하늘/☎ : 2147-300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사업소고시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20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 가<br>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한화    | 서울특별시 중구<br>장교동 1 | 서울시계내 한강<br>(선유도 공원 앞,<br>여의도 시민공원 앞) | 선박 32척<br>(기선4, 부선28) | 2018 한강몽땅축제<br>불꽃행사 | 2018.09.27.<br>~<br>2018.10.08. | 2018.<br>09.27. |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20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 가<br>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교통공사 사장<br>(토목1사업소) | 서울특별시<br>성동구 천호대로<br>346 | 서울시계내 한강<br>(잠실철교) | 선박 2척 | 잠실철교<br>유지보수공사 | ' 18.10.01~<br>' 18.12.31. | ' 18.<br>09.28. |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년월일      |
|---------------------|---------------------------------------------|----------------------------|------|-------------------|-----------------------------------------|------------|
| 성 명                 | 주 소                                         | 운항구역/<br>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
| 주세븐마린레저<br>(대표 박명철) | 서울시<br>도봉구<br>해등로 295<br>우성아파트<br>202동 103호 | 서울시 용산구<br>이촌동 361<br>(한강) | 유선사업 | 간이승선대용 폰툰<br>150㎡ | 2018.10.1.<br>~<br>2018.12.31.<br>(2개월) | 2018.9.20. |

## 사업소공고

### ◆ 성동소방서공고 제2018-2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성 동 소 방 서 장

#### ○ 등록대상

| 업 종<br>(등급 및 분야) | 등록번호<br>(등록년월일)                         | 상 호<br>(사업자번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소방시설관리업          | 제서울(성동)<br>-2018-0002호<br>(2018.09.28.) | 한방유비스주<br>(220-81-15635) | 황현수<br>최두찬 | 서울특별시 성동구<br>성수일로 77, 9층<br>(성수동1가) | 02-2023<br>-5000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동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2622-169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 타**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4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585-3 외 2필지
  - 면 적 : 90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 내 역 : 차집관로 D800mm, L=18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착수일 ~ 2018.12.31.(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4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시 수석동~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일원
- 면 적 : (당초) 1,166.17㎡(일시 390㎡) (변경) 1,163.96㎡(일시 3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
- 내 역

| 당 초                         | 변 경                          |
|-----------------------------|------------------------------|
| - 가스관 매설(φ762mm) L=1,196.9m | - 가스관 매설(φ762mm) L=1,193.99m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2017.10.01. ~ 2018.11.30.)



정 정

## ◆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 정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정사항**

서울시보 제3474호(2018. 7. 19.) 82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별표 2 중 누락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누락사항 : 조례 별표 2 중 제3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 기존                                                                                                                                                                                                                                                                                                                                                                                                                                                              | 정정                                                               |
|-----------------------------------------------------------------------------------------------------------------------------------------------------------------------------------------------------------------------------------------------------------------------------------------------------------------------------------------------------------------------------------------------------------------------------------------------------------------|------------------------------------------------------------------|
| <p>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기본계획용적률이란 저밀관리구역을 단독의 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용적률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기 전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등을 기초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본계획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p> <p>2) 관리목표용적률이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밀관리구역에 새로이 정한 용적률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공한 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3) 이전대상연면적이란 기본계획용적률과 관리목표용적률의 차에 해당하는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즉, 기본계획용적률을 적용한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과 목표용적률을 적용한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의 차)을 말한다.</p> | <p>3. -----<br/>-----.</p> <p>가. (변경 없음)<br/>1) ~ 5) (변경 없음)</p> |

| 기존                                                                                                                                                                                                                                                                                                            | 정정                                                                                         |        |           |         |                                                                              |        |        |          |                           |        |        |           |  |
|---------------------------------------------------------------------------------------------------------------------------------------------------------------------------------------------------------------------------------------------------------------------------------------------------------------|--------------------------------------------------------------------------------------------|--------|-----------|---------|------------------------------------------------------------------------------|--------|--------|----------|---------------------------|--------|--------|-----------|--|
| <p>4) 이전대상용적률이란 이전대상연면적을 고밀개발구역의 택지면적(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정비구역 면적으로서 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을 말한다)으로 나눈 용적률을 말한다.</p> <p>5) 인센티브용적률이란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보호 등의 공공기여를 인정하여 완화하는 용적률을 말한다.</p> <p>&lt;누 락&gt;</p>                                                                                                 | <p>나. 관리목표용적률은 저밀관리구역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다.</p> <p>&lt;표 변경 없음&gt;</p> |        |           |         |                                                                              |        |        |          |                           |        |        |           |  |
| <table><tr><th colspan="3">입 지 특 성</th><th>관리목표용적률</th></tr><tr><td>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br/>.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하여 자연경관지구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td><td>자연경관지구</td><td>1종, 2종</td><td>90퍼센트 이하</td></tr><tr><td>그 밖에 저밀주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td><td>최고고도지구</td><td>1종, 2종</td><td>120퍼센트 이하</td></tr></table> | 입 지 특 성                                                                                    |        |           | 관리목표용적률 |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br>.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하여 자연경관지구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자연경관지구 | 1종, 2종 | 90퍼센트 이하 | 그 밖에 저밀주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최고고도지구 | 1종, 2종 | 120퍼센트 이하 |  |
| 입 지 특 성                                                                                                                                                                                                                                                                                                       |                                                                                            |        | 관리목표용적률   |         |                                                                              |        |        |          |                           |        |        |           |  |
|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br>.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하여 자연경관지구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자연경관지구                                                                                     | 1종, 2종 | 90퍼센트 이하  |         |                                                                              |        |        |          |                           |        |        |           |  |
| 그 밖에 저밀주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최고고도지구                                                                                     | 1종, 2종 | 120퍼센트 이하 |         |                                                                              |        |        |          |                           |        |        |           |  |

◆ 동대문구고시 제2018-84호 정정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보 제3484호(2018. 9. 27.) 466면에 게재된 “동대문구고시 제2018-84호” 의 내용 중 단순 기재오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동 대 문 구 청 장

정정사항 : 동대문구고시 제2018-84호 중 오탈자 정정

| 구분        | 기존                                     | 정정                                   |
|-----------|----------------------------------------|--------------------------------------|
| 오탈자<br>정정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br>(변경없음)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br>(변경) |

이 외의 변경사항 없음.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        |  |
|--------|--|
| 기관의 장  |  |
| 선<br>람 |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  |  |  |  |  |  |  |  |  |